



Spain

#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Spain

#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15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본 안내서는 스페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스페인세법 등을 2015년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참고 자료 일 뿐,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적용 시에는 반드시 스페인세법 및 조세 조약의 관련조문 등을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세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부 등 공인된 정보원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서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다음 기회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머리말

국세청은 현지 국가의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최근 동향 및 세법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일본, 스페인에 대한 세무안내서와 이전가격 과세위험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대한 세무안내서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무안내서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서에 수록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추가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좀 더 유익한 세무안내서 발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현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12월

국제조세관리관 서진욱





<b>I. 스페인 국가 개황</b> .....	1
1. 국가 개요 .....	2
2. 한국 - 스페인 관계 .....	3
3. 정치동향 및 대외 관계 .....	5
4. 한국과의 주요 이슈 .....	7
<b>II. 스페인의 조세 제도</b> .....	9
1. 조세제도 개괄 .....	10
2. 법인세(CIT) .....	14
3. 개인 소득세(PIT) .....	29
4. 비거주자 소득세 (NRIT) .....	38
5. 부가가치세 .....	44
6.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	52
7. 기타 국제조세 관련 추가 이슈 .....	72
8. 기타 세금 .....	77
9. 세무조사 제도와 납세자 권리보호 .....	83
<b>III. 스페인 투자 정보</b> .....	97
1. 개요 .....	98
2. 투자 동향 및 진출유망 분야 .....	101
3. 투자지원제도 .....	105
4. 스페인의 투자 형태 및 절차 .....	109
5. 스페인의 노무관리제도 .....	114





IV. 부 록 .....	119
1. 이전가격 관련 법령 .....	120
2. 한-스페인 조세조약 .....	132
3. 참고 자료 .....	154

# I

## 스페인 국가 개황

1. 국가 개요 .....	2
2. 한국 - 스페인 관계 .....	3
3. 정치동향 및 대외 관계 .....	5
4. 한국과의 주요 이슈 .....	7



# 1 국가 개요

## □ 일반 사항

국 명	스페인 왕국 (el Reino de Espana : Kingdom of Spain)
면 적	505,370km <sup>2</sup> (한반도의 2.3배)
수도 / 인구	마드리드 (Madrid) / 4,650만 명 (스페인통계청, '14년 1월 1일)
주요도시	Madrid(639만 명), Cataluna(741만 명), Valencia(496만 명) 등
민족 / 언어	이베리아 / 공식어 : 스페인어, 공용어 : 4개 자치주 언어
종 교	국민의 94% 이상 로마 가톨릭 신자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 □ 경제지표

GDP / 1인당 GDP	GDP : €1조 229억 / 1인당 GDP : \$29,150 ('13년)
실질경제성장률	-1.2% ('13년)
실업 / 물가상승률	23.67% ('14년 3분기) / -0.3% ('14년 3분기)
화폐단위	유로(EURO), 1€ = 1,348.45원 ('14년 8~10월 평균 환율)
외채 / 외환보유고	€1조 6,722 ('14년 6월) / €396억 ('14년 9월)
산업구조	농축수산업(2.6%), 제조업(13.4%), 건설(7.8%), 숙박/운송/도소매 (25.9%), 공공행정/보건/교육(18.3%), 금융/보험(3.8%), 정보통신 (4.0%) ('13년 4분기 GDP기준)
교역규모	수입 : €2,502억, 수출 : €2,342억 ('13년)
교역품	수출 : 자동차, 산업용기계, 농수산물 등 수입 : 원자재, 자동차부품, 산업용기계, 전자/전기기기 등



## 2 한국 - 스페인 관계

### □ 체결협정

- ('72년) 사증 면제 협정
- ('75년)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공업소유권 협정
- ('89년) 항공 협정
- ('94년) 이중과세방지 협정, 투자보장 협정
- ('00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 ('11년) 한-EU FTA 잠정발효

### □ 교역 규모 및 교역품('14년)

- (교역규모) 한국의 수출 \$20억 7,000만, 한국의 수입 \$28억 9,000만

<對 스페인 한국 교역 연도별 추이>

(단위 : \$1백만, 전년동기대비 %)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수출	금 액	1,858	1,858	1,668	1,682	2,068
	증감률	7.0	-0.1	-10.1	0.8	23
수입	금 액	995	1,162	1,293	1,597	2,887
	증감률	9.1	21.6	11.3	23.5	80.8
무역 수지	금 액	903	696	375	85	-819
	증감률	4.9	-22.9	-46.0	-77.3	-1,063

- (교역품목)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 수출, 천연가스, 승용차 등 수입

<'14년 對 스페인 5대 수출품목>

(단위 : \$1백만, %)

순위	품 목	'14년		'13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총 계	2,068	23.0	1,682	0.8
1	자동차부품	331	351.8	306	8.3
2	승 용 차	309	1.3	73	10.4
3	무선전화기	180	-19.5	224	4.9
4	합성수지	168	16.1	141	41.6
5	타 이 어	84	16.4	75	54.2

<'14년 對 스페인 5대 수입품목>

(단위 : \$1백만, %)

순위	품 목	'14년		'13년	
		금 액	증감률	금 액	증감률
	총 계	2,891	81.1	1,597	235
1	천연가스	569	997.4	52	-
2	승 용 차	323	415.5	150	-
3	나 프 타	272	81.1	63	329.1
4	윤 활 유	184	18.2	156	-27.4
5	의 약 품	174	15.3	151	4.3

□ 투자 교류 및 교민

- (투자 규모) 한국에 대한 투자 \$1,564만, 한국의 투자 \$6,640만

<연도별 투자 신고현황>

(단위 : \$1천)

직접투자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스페인→한국	90,131	137,874	11,244	106,019	15,642
한국→스페인	55,873	337,115	172,449	64,980	66,398

- (한국 교민) 2,385명의 한국 교민이 스페인 거주 ('14년 6월 기준)



## 3

## 정치동향 및 대외 관계



## □ 정치동향

- (정권 교체) 유럽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의 오랜 집권당이었던 사회당 (PSOE)이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국민당(PP)의 정권교체가 이뤄짐
  - 국민당 당수 Mariano Rajoy가 총리로 취임하여 각종 개혁조치 단행
  - 그러나 경제난은 오히려 악화되어 국민들의 실망이 점증하는 한편 야당인 사회당(PSOE)도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여 전반적인 정치 불신이 팽배한 상황
- (평가) 신정부는 추가긴축안\*을 발표하여 국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으나 EU 회원국들은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
  - \* 부가세 인상, 실업수당 장기수령자에 대한 지급비율 축소, 공무원 연말 상여금 미지급(연봉 7% 감소효과) 등의 정책이 포함
- (분리독립 움직임) 스페인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움직임이 꾸준히 지속
  - \* 가장 많은 세금을 중앙정부에 납부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분배받아 불만을 제기하며 재정 자치권을 요구
  - 분리주의 움직임이 실질적 독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으나, 지방색이 강한 자치정부들을 단합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부각

- ◆ 스페인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입헌군주제 국가로 양원제 국회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임기는 4년
- ◆ 스페인의 주요 도시인 바르셀로나가 속해있는 카탈루냐 지역은 자신들만의 언어(카탈란)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카탈루냐인이라는 강한 정체성을 공유

## □ 주요 대외 관계

- (정책 기조) 스페인은 70년대 중반 민주화 도입 이후, 그 동안 **편향돼 있던 외교정책을 재정비** 하는데 주력
  - '55년 UN 가입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 각각 '82년, '86년 가입함으로써 서방세계와의 외교 기반을 확보
  - 그간 EU 내 정책사항 마련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 EU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의 경기침체로 EU 내에서 스페인의 입지가 약화
- (중남미와의 관계) 스페인은 역사·문화적으로 **중남미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현재까지 정치 및 경제 협력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
  - '90년대 초 해외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후 스페인은 중남미 지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
  - 그러나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스페인 기업 Repsol이 57%의 지분을 갖고 있는 YPF(아르헨티나 최대 정유사)사를 국유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가 긴장
- (독일과의 관계) 스페인-독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긴축기조 유지**에 대한 뜻을 공유하고 있음을 표명
  - 스페인 언론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스페인과 독일의 화합과 협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며
  - 프랑스 내 긴축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 프랑스와의 협력 체제가 약화되고 독일-스페인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탄생
- (영국과의 관계) 스페인 남단의 영국령 지브롤터의 영유권 문제로 **영국과 불편한 관계 유지**
  - 지브롤터 인근 스페인 어선의 조업을 두고 지브롤터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자 스페인이 보복조치로서 지브롤터로의 출입국 통제를 강화

## 4 한국과의 주요 이슈

### □ 경제위기로 수출여건은 위축되었으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대

- 한국은 스페인과의 교역에서 매년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08년 경제위기, '11년 유럽 재정위기의 재점화로 인해 수출여건 악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스페인의 관심이 증가
  - 우리나라의 90년대 말 구제금융 위기 극복,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등에 대해 한국을 높이 평가
  - 또한 해외진출 과정에서 우리기업과 경쟁관계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면서, 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

### □ 상호 투자분야 다변화 및 관심 증대

- 스페인은 그간 중남미와 인근 유럽 지역에 집중했던 투자 패턴에서 벗어나 아시아권으로 진출하려는 추세
  - 최근 스페인의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기업 Abengoa 그룹의 자회사인 Befesa는 한국철강분진처리 사업 진출을 위하여 국내기업에 투자
  - 이러한 한국 투자계획이 현지 언론에 공표되면서 현지 주요 기업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황
- 한국의 대 스페인 투자도 활발
  - 과거 우리나라의 대 스페인 투자는 도소매업 관련 국내기업들의 법인 및 지점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투자분야가 다변화\*
    - \* 한진해운 TTIA 터미널 운영, GS 건설 스페인 수처리업체 INIMA사 인수, SK루브리컨트(현지 최대 정유사 Repsol과 공동) 윤활유 공장 설립 추진
  - 스페인의 투자유치 진흥기관인 Invest In Spain은 우리나라를 스페인의 12대 투자유치 중점 대상국에 포함



## □ 한국 - 스페인 사회보장협정 발효

- 협정의 시행에 따라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의 이중적용이 일정기간(5년)동안 면제
  - 스페인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스페인의 공적연금과 실업보험 적용이 면제되어 스페인 상해 보험료만 납부하고, 그 외의 보험료는 한국에 납부

## □ 한국 - 스페인 간 각종 정책협의회 개최

- 한국의 외교부 제1차관과 스페인 외교부 차관은 양국 우호협정 증진을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합의
  - 양국 기업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방안, 워킹 홀리데이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여 향후 양국 간 인력 교류의 활성화가 예상
- 또한 한국 - 스페인 라틴아메리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외교부 중남미 국장과 스페인의 외교부 중남미 국장이 참여
  - 중남미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의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중남미를 진출하는 삼각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 □ 제1차 한-스페인 건설 비즈니스 포럼 개최

- 서승환 국토부 장관 및 Catala 차관을 비롯해 양국 건설부 인사, 건설협회 대표 및 주요 건설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
  - 이번 포럼에서 양측은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
  - 한국 해외건설협회(ICAK)와 스페인 건설협회(SEOPAN)간 인프라·플랜트 협력 MOU를 체결, 양국 간 인프라 분야에서 개발협력을 강화

# II

## 스페인의 조세 제도

1. 조세제도 개괄 .....	10
2. 법인세(CIT) .....	14
3. 개인 소득세(PIT) .....	29
4. 비거주자 소득세 (NRIT) .....	38
5. 부가가치세 .....	44
6.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	52
7. 기타 국제조세 관련 추가 이슈 .....	72
8. 기타 세금 .....	77
9. 세무조사 제도와 납세자 권리보호 .....	83



# 1 조세제도 개괄

## □ 스페인 조세개요

### ○ 조세제도 특징

- 스페인 세금은 이를 규정하는 정부 주체에 따라 국세(State Tax)와 광역단체 지방세(Regional Tax), 기초단체 지방세(Local Tax)로 분류
- 세금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으로 Law 58/2003(General Tax Law)을 두어 세금제도에 대한 기본 접근 방식과 절차에 대해 **규율함\***

- \* 세법(Law 58/2003)에 대한 시행령은 다음과 같음
  - (세무조사) Royal Decree 939/1986 (신법 대체 예정)
  - (징세) Royal Decree 939/2005
  - (조세법 위반) Royal Decree 2063/2004
  - (불복심리에 관한 절차) Royal Decree 502/2005

- 지역세의 경우 일반세법에 의하여 제한되나 수입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됨

### ○ 과세의 권한

- 과세권한은 국가와 17개 자치단체사이에서 공유되나 부분의 세금이 국세와 광역단체 차원에서 **세무청(AEAT)에 의해 징수됨**
- 다만 Basc Country나 Navarra 자치단체의 경우 광범위한 과세 권한을 가져\*, 자치법규에 따라 기업·개인·비거주자 소득세를 규정할 수 있음
- 나머지 자치단체의 경우 제한된 과세권한을 가지는 바\*\*, 증여세 등 몇 세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자치법규에 따라 규율할 수 있음

\* 근거법규 : Basc Country(Law Organic12/2002), Navarra(Law Organic 125/2003)

\*\* 근거법규 : Law Organic 8/1980, Law 21/2001



○ 세금의 종류 및 구조

	국 세		지 방 세	
직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소득세</li> <li>◆ 개인소득세</li> <li>◆ 비거주자소득세</li> </ul>	소득에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세</li> <li>◆ 경제활동세</li> </ul>	정기적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증여세</li> <li>◆ 재산세</li> </ul>	자산에 부과		
간접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가가치세</li> <li>◆ 양도세</li> <li>◆ 우편세</li> <li>◆ 소비세</li> <li>◆ 관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세</li> <li>◆ 도시혼잡세</li> </ul>	수시 부과

□ 스페인 세무청(AEAT)

○ 설립 및 구성

- 세무청(AEAT)는 Law 31/1990 Article 103에 의해 설립근거가 마련되어 '92년 1월 1일 재정부 산하 외청으로 발족하였으며, 관세와 국세의 집행 기관으로서 세법을 제·개정할 권한을 보유하지 않음
- 세무청은 기능별로 분류된 중앙조직과 지역 관할에 따라 분류된 지방 조직으로 나뉘며, '13년 말 기준 총 26,231명을 고용(여성 비율 5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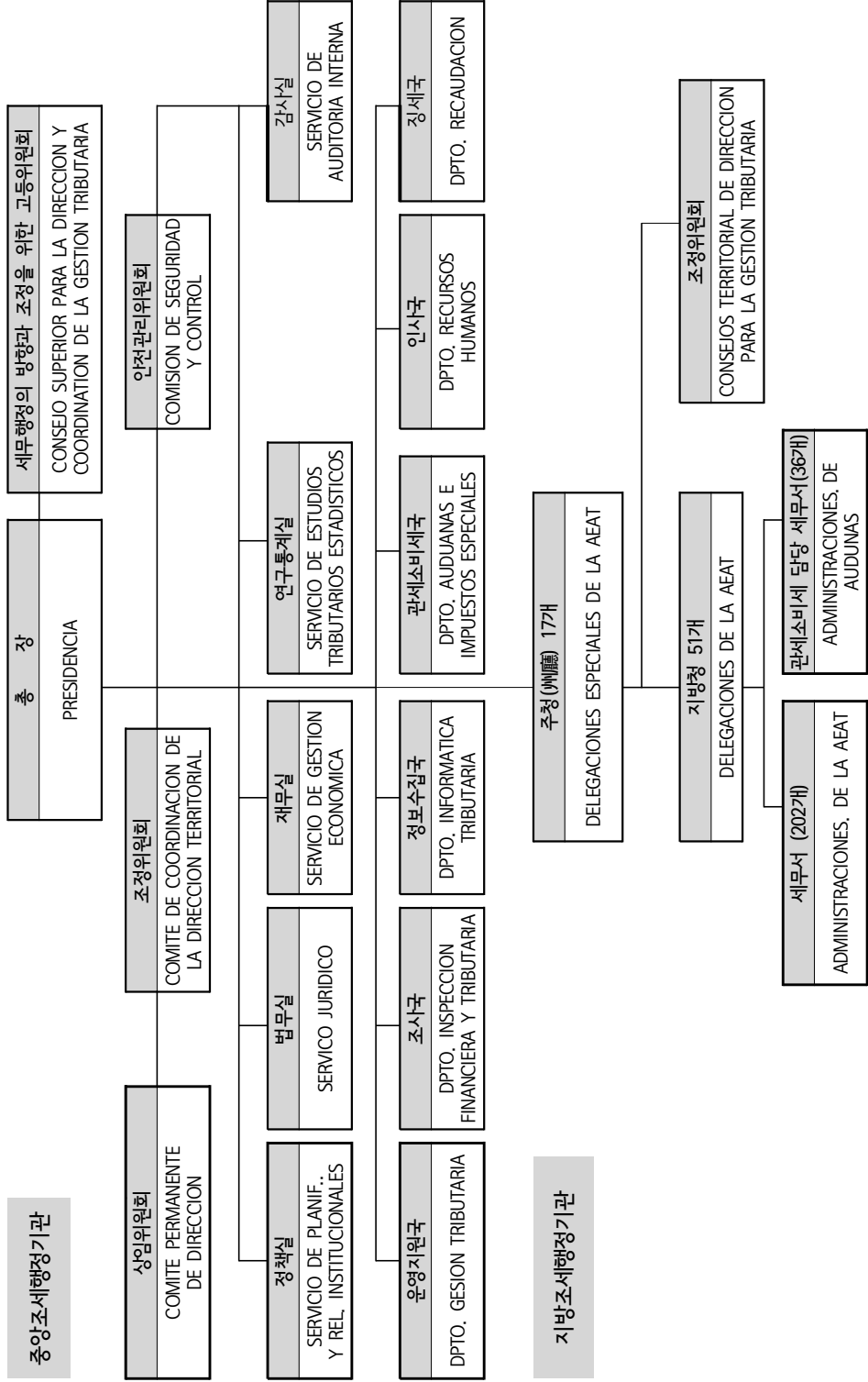
○ 주요 세입 통계('13년도 귀속)

- 세무청에 등록된 총 납세자수는 52,932,327명(사업자 수 7,618,783)

(단위 : €1백만)

	전 체	개인소득세	비거주자소득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총세입	219,761	82,171	4,222	28,884	78,050
순세입	168,847	69,951	1,416	19,945	51,931

○ (조세 행정기관의 구조) 세무청(AEAT)는 관세를 포함한 세무행정의 집행기관으로 기능





## □ 한눈으로 보는 스페인의 조세제도

### ○ 법인세

- ◆ 세율 : 28% 단일세율 ('16년 25%까지 세율 감축)
- ◆ 신고기간 :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25일 이내에 신고
- ◆ 과세기간 : 회계기간과 일치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역년에 따라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됨
- ◆ 세금의 선납 : 총 3회(4월, 10월, 12월)에 걸쳐 세금을 선수 분납

### ○ 개인소득세

- ◆ 세율 : 각 소득을 일반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어 분리과세하며 일반소득은 19%~45%, 자본소득은 19%~23%로 초과누진 과세
- ◆ 신고기간 :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
- ◆ 원천징수세율은 15%
- ◆ 세금의 분납 : 납부 세액의 60%를 6월까지, 나머지 40%를 11월 5일까지 분납 가능

### ○ 비거주자 소득세

- ◆ 세율 : 소득 종류에 따라 20% 혹은 24% 단일세율 과세
- ◆ 신고기간 : 4월, 7월, 10월, 1월 20일 매 분기별로 소득세 신고·납부
- ◆ 소득세법상 조세특례제도로 다국적 기업 등에 고용되어 스페인에 파견된 외국 근로자의 경우 개인 소득세와 비거주자 소득세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

### ○ 부가가치세

- ◆ 신고 기간 : 전년도 매출이 €3,010,121이 넘는 납세자의 경우 매달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외에는 분기별로 20일까지 신고
- ◆ '15년 대리납부제도가 개정되어 대리납부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대리납부의무를 지닌 재판매업자가 매출규모에 대한 고지 및 증명을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 됨

### ○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제출 서류

- ◆ 기업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를 담은 문서 (Model 200)와 마스터파일(Master file), 로컬파일(Local file)을 함께 제출
- ◆ 연간 총매출이 €750백만 이상인 스페인에 거주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16년부터 국가별 보고파일(Country-by-Country report) 제출 의무

## 2 법인세 (CIT)

### 가. 개요

#### □ 납세의무자 : ‘거주’여부에 의해 결정

##### ○ 거주 여부에 따른 납세의무의 범위

- (거주 법인)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 사업 활동을 통한 이윤, 투자(사업목적 여부 무관)로부터의 소득, 자산의 양도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과세
- (비거주 법인\*) 지사, 사무소,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이윤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

\* 비거주 단체에 대한 규정은 Legislative Royal Decree 5/2004, of March 5에 따라 개정 비거주자 소득세법에 별도 규정

##### ○ 거주 여부의 판단

- (기준) 스페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스페인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거주법인으로 봄
- (이의) 거주 여부 결정에 이의가 발생할 시 스페인과 해당 법인 출신국 간에 이뤄진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 ○ 거주자로의 간주

- 세무당국은 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거나 조세피난처\*에 거주하고 있는 단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페인의 거주자로 간주할 수 있음

- ① 자산의 대부분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스페인에 소재한 경우
- ② 단체가 소유한 대부분의 권한이 스페인에서 행사되는 경우
- ③ 단체의 주된 활동이 스페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Article 1 of Royal Decree 1080/1991, of July 5 규정에 따라 판별



□ 근거 법령

- Corporate Income tax law (Law 27/2014 of November 27)
- Corporate Income tax law Regulation (Royal Decree 1793/2008)

\* '14년 말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으나 '15년 6월 기준 RD 1793/2008가 여전히 유효

□ 세율

○ 일반사항 요약

구 분	세율(%)
기본세율 (Corporate Income Tax Rate)	28 (a)
자본이익 (Capital Gains Tax)	28 (a) (b)
지 점 세 (Branch Tax)	28 (a)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배 당 (Dividends)	20 (c)
이 자 (Interest)	20 (c)
로 알 티 (Royalties from patents, Know how, etc)	24
지점송금 (Brach Remittance Tax)	20 (c)

- (a) 법령 개정으로 과세연도에 따라 다른 세율이 부과됨. 하단 일반세율 참조
- (b) 경우에 따라 면세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도 함. 하단 자본이득 참조
- (c) '16년도에는 19% 세율로 과세됨

○ 기본세율

- '14년 이전 과세기간까지 30%의 세율로 과세되었으나 최근 법인세법 개정예 따라 '16년 25%까지 세율 감축('15년 28%)
- 업종(화석연료 탐사 35%, 집합투자 1%) 및 소재지역(카나리아 특별자치 구역 4%) 등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



○ 중소기업 특례

- 연매출 €1,000만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25% 세율 적용(단 '15년의 경우 과세표준 €30만 이하 구간 25%, 그 초과분에 대해 30% 적용)
- 연매출 €500만 이하이면서 평균 근로자 25인 이하 영세 사업자에 대해 €30만까지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 적용

○ 신설 법인에 대한 특례

- (대상) '13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신설 법인\*
- \* 단, 결손법인이나 기업집단에 속하는 신설 법인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범위) 양(+)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첫 번째, 두 번째 과세기간
- (세율) '15년부터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15% 세율로 과세

	과세표준 €30만 이하	과세표준 €30만 초과
'14년 이전	15%	20%
'15년 이후	15%	

□ 신고 세부 사항

- (과세기간) 회계기간과 일치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역년(曆年)에 따라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됨
- 다만,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기간을 역년과 달리 정할 수 있음

- ① 단체의 소멸
- ② 해외로 거주지 이동
- ③ 법적 형식의 변화에 따른 세율 변경, 면세 적용

- (신고기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25일 이내에 신고
- 역년과 일치하는 과세기간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12년도 귀속 법인세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세금의 선납) 총 3회(4월, 10월, 12월)에 걸쳐 세금을 선수 분납하여야 하며 분납액 계산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단, 과세기간 개시 직전 12개월의 총 매출액이 €6,010,121.04 이상인 기업은 반드시 과세표준법에 따름

① (미지급세금법) 1회 당 전년도에 확정된 납세의무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

② (과세표준법) 아래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

- ◆ 4월 : 당해 1월~3월 과세표준에서 원천분을 뺀 금액
- ◆ 10월 : 당해 1월~9월 과세표준에서 4월 선납분과 원천분을 뺀 금액
- ◆ 12월 : 당해 1월~11월 과세표준에서 4·10월 선납분과 원천분을 뺀 금액

과세표준 (€)	1천만 미만	1천만~2천만	2천만~6천만	6천만 이상
세율 (%)	21	23	26	29

## 나. 과세표준의 산정

### □ 일반

○ 과세소득은 발생한 수입과 비용의 차이로 산출되며 일반적으로 스페인 기업회계 기준(Spanish GAAP)에 따라 작성된 연차 재무제표 상 당기순 이익을 중심으로 세무조정을 통하여 산출함

- 일반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산출하는 데 사용된 필요 경비와 생산에 사용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총 소득에서 공제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공제될 수 없는 항목에 속함

- ① 벌과금
- ② 법인세 납부금액
- ③ 승인된 기관 외의 단체에 대한 기부금
- ④ 자본자산의 개선 및 보강에 사용된 지출

- ⑤ 상각범위액 초과 계상 감가상각비
- ⑥ 직·간접적으로 스스로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예 :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 ⑦ 조세피난처의 거주자 또는 단체들에 의해 지출된 경비
- ⑧ 해외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실(양도되거나 폐업한 경우 제외)

- 기존에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공제가 가능했던 유형·무형자산, 부동산에 대한 감액손실분은 '15년 1월부터는 해당 자산이 제 3자에게 양도되거나 내용연수 안에서 상각될 때만 공제가 가능

## □ 감가상각 (Depreciation)

### ○ 개요

- 토지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며 감가상각은 구매한 자산의 취득금액(관세, 운송료, 설치비 등 제반비용 포함)이나 제조한 자산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으로서 결산서 상에 비용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됨

### ○ 감가상각 방법

- ① 모든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해 정액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 ② 정률법은 3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는 산업·농업용 기계나 차량 운반구, 정보통신 시스템 등 제한된 자산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 ③ 과세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별법을 적용할 수 있음

### ○ 감가상각률

- 감가상각 최대허용 비율은 법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산업부문마다 차이가 있으나 정액법에 대한 일반 규정은 다음과 같음



자 산	차 량 운반구	사무용품	산업용 부동산	사무실용 부 동 산	기계장치	컴 퓨 터
최대인정 비율(%)	16	10 또는 15	3	2	10 또는 12	25
최대내용 연수(연)	14	20 또는 14	68	100	20 또는 18	8

\* 법으로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 감가상각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초과된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음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 '12~'14 과세연도의 경우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10년 미만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연간 10%의 비율로 상각됨
- 다만 '15년 과세연도의 경우 무형자산은 2%, 영업권은 1%만 감가 상각이 인정됨
- '16년 과세연도부터는 모든 무형자산(영업권 포함) 5%까지만 인정되므로 회계상 회사계상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하여 사후 추인

○ '13년, '14년 과세연도의 적용특례

- 총수입금액이 €1천만 초과 법인의 경우 총 감가상각·상각비의 70%만을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13년, '14년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는 차기 이월될 수 있으며 내용연수가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10년에 걸쳐 공제될 수 있음

□ 준비금의 자본전입 (Capitalization reserve)

- (도입) '15년 1월 1일부터 법인세법 상 자본전입에 관한 규정이 도입됨
  - (공제 금액) 납세자는 해당연도 순자산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표준(차기 이월된 결손이 적용되지 않은 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차후 2년간 이월될 수 있음
- \* 기업의 회계연도 초 순장부가치와 회계연도 말 익금불산입 조정이 이뤄진 후 순장부가치의 차이의 10%로 책정됨

- (공제 요건) 배분 불가능한 이익준비금을 과세표준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장부상에 5년간 기재하여야 함

#### □ 배당금 (Dividend)

- (원천징수) 배당금은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21%의 세율로 원천징수 됨. 적용세율은 관련된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더 작아질 수 있음
- (비과세) 특정 기업(EU 모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5%이상의 투자 지분을 12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원천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규정) 다른 국내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스페인 국내기업이고 투자지분이 5%미만인 경우에는 배당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됨

#### □ 자본이득 (capital gain)

- (총수입에 포함) 별도 양도소득세가 없어 주식이나 기타 증권의 양도에 따른 수익이나 결손은 법인의 총수입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구성
- (세율) '15년 스페인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자본이득은 20%의 세율로 과세되며,
- (면세 요건) 양수자가 EU 소속 국가의 거주자이고 주식과 같은 동산을 양수할 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됨

- ① 회사의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스페인의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
- ② EU 소속 국가에 거주지를 둔 개인 주주가 직전 12개월 동안 스페인 기업의 지분을 25% 이상 소유한 경우
- ③ 경영권을 5% 이상 소유하지 않았거나 취득금액이 €2천만 미만인, EU 소속 국가에 거주지를 둔 법인 주주로서 해당 지분을 1년 이상 소유한 경우



□ 특허박스제도 (Patent Box Regime)

○ 개요

- 지적재산권(IP)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비과세하거나 법인세를 인하해 주는 제도로 기업의 특허기술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이 목적
- 스페인은 기존 지적재산권 개발비용을 최소 25% 지불하는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최근 BEPS에서 논의되는 유해조세경쟁 대응 (액션플랜5)을 국내법에 반영하여 특허박스제도를 개정함

○ 적용 요건

- (적용 방법) '16년도 과세기간부터 수정된 연계접근법을 적용하여 납세자 본인에 의해 실제로 연구개발활동이 수행된 지적재산으로부터의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조세특혜제도 혜택을 허용
- (적용 대상) 기술적 IP, 특허권, 영업 비밀 또는 절차, 디자인권 등의 수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나 상표권이나 소프트웨어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세제 혜택은 제공하지 않음
- (공제 범위) 지적재산권 개발 총 지출액 중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적격지출액의 비율만큼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한정

$$\text{공제대상소득} = \frac{\text{IP 개발과 직접적 관련 있는 적격 지출}}{\text{IP 개발시 발생한 총 지출}} \times \text{IP로 부터 발생한 총 소득}$$

- (적용 기간) '16년 6월 30일 이전에 개발한 지적재산권의 경우 기존 특허 박스 제도와 개정된 특허 박스 제도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

## □ 영업손실

### ○ '16년도 과세기간 이후 적용 규정

- 개정 법인세법은 종전에 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장래 18개 과세기간에 걸쳐 이월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16년도 과세기간부터 과세표준(준비금의 자본 전입에 따른 공제가 적용되기 전)의 60%에 해당하는 만큼만 영업손실 공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
- 이러한 제한은 €1백만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적용되며 60% 비율 제한은 '17년도 과세기간부터 70%로 상향 적용됨

### ○ '12~'15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경과 규정

- 수입금액이 €2천만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의 바로 다음 과세연도에 다음과 손실이월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경과규정이 적용

- ① 과세연도 개시 전 12개월 간 수입금액이 €2천만~€6천만인 경우 이월결손금은 과세소득의 최대 50%까지 인정될 수 있음
- ② 과세연도 개시 전 12개월 간 수입금액이 €6천만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25%까지 인정될 수 있음

### ○ 소유권 변동 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인정에 관한 강화된 규정

- 개정 법인세법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기업이 소유권 변동 후 2년 이내에 기존과는 다르거나 추가적인 영업을 한 결과 발생한 순매출액이 직전 2년의 평균매출액보다 클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의 이월을 인정함

## □ 기업집단 통합 과세

### ○ 개요

- 과세연도 개시 이전에 기업집단에 속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고 이러한 의결과정이 세무당국에 미리 통지된 경우 기업집단은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여 기업집단의 모든 손익을 합쳐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음



○ 적용 요건

- 기업집단 통합과세 대상 기업집단은 국내 거주 모기업에 의해 대표되는 지배되는 국내 거주 기업의 집합. 모기업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1) 모기업은 주식회사(Sociedades Anonimas), 유한책임회사(Sociedades Limitadas) 그리고 합명회사(Sociedades Comanditarias por Acciones) 중 하나의 법적형식을 택하거나 적어도 법인격을 보유하여야 함

2) 모회사로 간주되기 위한 지배요건

- ① 직·간접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의 75%를 소유하고 통합하여 과세되는 과세연도 해 전반 걸쳐 50% 이상의 의결권을 유지·보유
- ② 다른 기업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③ 국내나 유럽경제이익공동체(Agrupaciones de Interes Economico) 혹은 임시 사업공동체(Uniones Temporales de Empresas) 상 특별 과세체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아니어야 함

- 모기업과 다른 세율의 적용을 받거나 파산과 같이 특별한 법적 지위에 있는 조세감면 기업들은 기업집단에 포함될 수 없음

○ 기업집단 범위의 확대('15년 1월 1일 이후 적용)

- 외국 중개회사에 의해 간접 소유된 자회사도 세무상 기업집단에 포함
- 수평적 합병도 인정되는 바, 공통된 외국 모기업 든 직접 지배되는 자회사나 간접 지배되는 자회사 모두 기업집단을 형성할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 관련 규정

- (비용 인정 범위) 외국납부세액은 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으로 인정되나 스페인 내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 (기타 규정) 스페인 기업의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윤에 해외의 유사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스페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고자산

- (규정의 유무) 스페인 법인세법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있지 않으나 가중평균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선입선출법도 인정됨
- (제한) 유사한 성질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같은 평가 방법이 적용되어야 함

□ 원천세

- (세율) 스페인의 원천세는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해 21%, 로얄티에 대해 24%가 부과되나, EU 거주기업에게 지급되는 로얄티의 경우 0% 세율이 적용됨
- (기타 규정) '11년 7월 1일부터, EC Interest and Royalties Directive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기술지원료나 관리수수료에도 원천세가 부과되며 EU 거주기업에게 부과되는 이자는 원천세가 면세됨

다. 주요 세액 공제

이하 열거하는 세액공제의 합계는 납부할 총 세금의 35%를 초과할 수 없으며 10년에 걸쳐 차기 이월 가능 (단, R&D와 기술투자의 경우 15년)

□ 특별이익의 재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개요

- '06년 1월 이후 과세기간에 특정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재투자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양도소득의 일부 금액만 재투자할 경우 일부 세액공제도 가능
- 재투자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하며 재투자가 자산의 양도 이전에 이뤄진 경우 양도된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함



○ 세액공제의 요건

- (양도대상 자산) ① 사업에 1년 이상 사용된 유·무형자산 또는 부동산  
                   ② 특정 법인에 대한 지분을 5% 이상의 증권으로 1년 이상 보유된 것
- (재투자 시기) 자산의 양도 이전 1년부터 양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다만 재투자의 기술적 성격상 해당 기간 요건을 지키지 못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재투자가 의무 자산에 관한 특별 규정

- 다음과 같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반드시 재투자되어야 함

- ① 사업에 공여된 유형고정자산 또는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으로서 재투자 기간 동안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자산
- ② 특정 법인에 대한 지분을 5% 이상의 증권으로서 1년 이상 보유된 것

□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개요

- 해당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R&D 투자금액에 대해 25%, R&D 활동에 공여된 자산취득에 사용된 비용의 8%, 기술혁신에 소요된 비용의 12%를 세액 공제
- 다만 스페인이나 EU 가입국 내에서 이루어진 투자활동에 한하며 투자 관련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세액공제액이 65% 감소됨
- 기술혁신에 따른 세액공제는 매년 €1백만, R&D와 기술혁신 세액공제는 양자를 합하여 €3백만을 초과할 수 없음

○ 세액공제의 요건

- ① 특정 활동이 R&D나 기술혁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 ② 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 후 최소 1년이 지나야하고
- ③ R&D와 기술혁신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 평균 수가 일정기간 유지되고
- ④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 후 24 개월 이내에 동일 금액만큼 R&D나 기술혁신에 투자해야 함

○ 기타 투자 세액 공제

세액공제 대상 투자	투자금액 공제율
☞ 스페인 영화·시청각 제작에 대한 투자	18%
☞ 직원 신기술 교육에 대한 투자	1%
☞ 환경보호를 위한 유형자산 구입	8%

□ 장애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

○ 개요 및 세액공제 요건

- 직전 기 평균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을 풀타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경우 장애인 근로자 1명 당 연 €6천를 세액공제
- 직전 기 평균 장애인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장애인을 추가 고용한 경우 추가 고용한 근로자가 장애율 33%~65%이면 연 €3천, 장애율 65% 초과이면 연 €6천를 추가로 세액공제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 개요 및 세액공제 요건

- 1단계) 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30세 미만의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 €3천 세액공제
- 2단계) 총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이고 실업급여 수급자인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최대 아래 산식의 50%까지 세액공제

Max[①, ②]

- ① 근로자에게 할당된 1년치 실업급여
- ② 근로계약 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남아있는 실업급여

□ 중소기업 이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 특별 자치구 중소기업을 위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 기간에 발생한 이윤을 과세관청의 허가를 받아 2년 이내에 사업상 자산에 투자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 그 10%만큼을 세액공제



## 라. '14년 귀속 법인세 계산 예시

### ○ 기초 요건

- 스페인 거주 유한책임회사(A)는 전기통신 서비스 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14년 재무제표에 따르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7,225,000 이고 '14년 선납한 세금은 €2,400,000임

### ○ 주요 거래 사실

- A는 사무실 임차료로 연간 €200,000 지급하였으며 A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여 원천세 €21,000 포함하여 연간 €100,000 임대수입 기록
- A는 '13년 귀속 법인세 비용으로 €2,167,500을 지출함
- A는 예측 가능한 대손과 관련하여 €170,000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그 중 €125,000는 '14년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기도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매출채권과 관련된 것임
- A는 '13년 7월 1일에 소프트웨어를 €600,000에 구입하였으며 이번 과세기간에 그에 대해 €300,000의 상각비를 인식하였음
- '13년 A는 예측가능한 대손과 관련하여 €350,000의 손상차손을 인식 ('13년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 만기가 2달 남은 매출채권 관련분)
-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보너스 비용으로서 장려금 €225,000을 기록하였으나 이와 같은 장려금을 지급과 관련한 계약서나 정관은 없음
- '11년 10월 1일에 €600,000을 주고 컴퓨터를 구입했으며 그 해에 감가상각비 €20,000을 인식함
- R&D 투자에 '14년 한 해 동안 €620,000을 지출하였으며 직전 2년간 평균 지출비용은 €120,000이었음
- 타 회사에 투자한 지분에 대해 원천세 €22,050 포함하여 2월 15일 배당금 €105,000 받았으며 해당 지분은 3월 말일에 양도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14 귀속 법인세 계산 예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7,225,000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2013년 귀속 법인세 총 납부금액	2,167,5001
매출채권 손상차손	125,0002
무형자산 상각비 상각부인액	102,0003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상각부인액	5,0004
상각에 대한 조정(30%)	63,9005
장려금	225,0006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지난 과세기간에 기록된 손상차손	(350,000)7
과세표준	9,563400
세율	30%
산출세액	2,869,020
세액공제	
R&D 투자비용	(240,000)8
총결정세액	2.629,020
기납부세액	
배당금 원천납부금액	(22,050)
부동산 임대소득 원천납부금액	(21,000)
선납세금	(2,400,000)
차가감 납부할 세액	185,970

1. 법인세 비용은 공제 불가능
2. 과세기간 말 기준 6개월 미만동안 발생한 손상차손은 공제 불가능
3.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은 최대 취득비용의 33%까지 인정됨
4. 전산처리 장비의 감가상각은 최대 취득비용의 25%까지 인정됨
5. 총 상각비의 70%의 만 세무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되므로 30%의 조정이 이루어짐
6. 장차 퇴사할 직원에 대한 장려금은 공제 불가능
7. 6개월 이상 경과된 손상차손은 공제 가능
8. 직전 2년간 발생한 R&D 비용의 평균보다 당해 발생한 R&D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 42% 공제가 가능(120,000×25%, 500,000×42%).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제금액이 총 결정세액의 25%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다만 동일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나 비용과 관련한 R&D 공제 금액이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총 결정세액의 10%를 초과한다면 50%까지 인정됨. 사례의 경우 R&D 비용이 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총결정세액의 10%를 넘으므로 공제 최대금액은 1,434,510이기 때문에 세액 공제 전액 인정 가능.

### 3 개인 소득세 (PIT)

#### 가. 개요

##### □ 납세의무자 : ‘거주’ 여부에 의해 결정

- 스페인 영토 내에 거주하는 개인
-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법이 정하는 몇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  
(예 : 외교관)

##### □ 거주자와 비거주자

###### ○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 스페인 영토에서 회계연도 중 183일 이상을 체류한 사람
-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직업이나 기업 활동의 기반이 스페인 영토인 경우

###### ○ 비거주자의 간주 납세의무

- 스페인 국적자 중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자는 4년간 납세 의무를 가짐
-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총소득의 75% 이상을 스페인에서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 소득세 대신 개인 소득세 납부를 선택 가능

###### ○ 예외 사항

-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 스페인 거주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개인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① 근로자가 스페인의 거주자에 해당
- ② 업무가 스페인 밖에서 효과적 수행 가능
- ③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 법인, 고정사업장 등에는 스페인 세법이 아닌 외국 세법이 적용
- ④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고 있는 해당 국가에서 스페인 개인 소득세와 유사한 세금이 부과
- ⑤ 제한사항으로 €60,100를 한도가 적용

□ 근거법령

- Personal Income Tax Law (Law 35/2006 of November 28)
- Personal Income Tax Law Regulation (Royal Decree 439/2007)

□ 과세대상 소득

- 일반소득(General Component)과 자본소득(Savings Component)을 구분하여 분리 과세하며 자본소득 외의 소득은 모두 일반소득에 해당됨

일반소득 (General Component)	자본소득 (Savings Component)
근로소득	이자 ·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자본의 거래로 발생되지 않은 금융소득	저작권 · 영업권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자본의 거래로 발생된 소득
기타소득	생명 · 장애보험금

□ 세율

○ 기본 세율

소득 구분	세 율
일반소득(General Component)	19% ~ 45%의 누진세율
자본소득(Savings Component)	19% ~ 23%의 누진세율



○ 사회보장 보험료

목 적	고용주 기여	근로자 기여
기 본	23.6%	4.7%
실 업	5.5%	1.55%
기 타	0.8%	0.1%
합 계	29.9%	6.35%

\* 사회보장 보험료 산정 소득상한은 월 €3,597

○ 원천징수 세율

- 그 동안 스페인은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 및 직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차별적으로 적용되었으나, 개인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15%로 적용하는 규정이 도입

- 이 개정의 적용 대상자는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과 연간 수입이 €15,000이상인 사업자들의 원천징수세율 15%가 적용됨

\* 고소득 직군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기존에 19%였으나 이를 15%로 인하

나. 과세표준의 산정

□ 과세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상여, 수당, 주택보조금 등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합으로 총 급여 산정

- 총 급여에서 사회보장 보험료 납입액을 차감한 후 €2,652를 근로소득 기본공제한 후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

근로소득금액	공 제 금 액
€9,180 이하	€4,080
€9,180 초과 ~ €13,260 이하	€4,080 - €(9,180 초과금액)*0.35
€13,260 초과	€2,652



- 납세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 100% 추가 증액하여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 납세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3,264 추가 공제하고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 시 €7,242 추가 공제

○ 사업소득

- 사업소득의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사업상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사업소득 산정
- 자영업자의 경우 매 4월, 7월, 10월, 1월 2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함
- \* 연간 수입금액이 €600,000이하인 기준, 단순 추계의 경우 20%, 소득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 시 객관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4% (PIT Art. 30,31)

○ 임대소득

- 임대수입에서 이자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의 필요경비는 임대수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주택 임대의 경우 임대소득의 60%를 공제하고, 임차인이 18세~30세이고 법으로 정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 이자·배당소득

- 배당소득의 경우 '15년부터 €1,500까지 비과세하나 집합투자기구이익, 배당결의일 기준 2개월이내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폐지

○ 양도소득

- 보유기간이 1년 이내인 자산의 양도소득은 일반소득으로 과세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본소득으로 과세
- 양도소득 일시경감규정으로 '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06년 1월 20일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 경감



<양도소득 일시경감규정>

- ◆ '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여 '06년 1월 20일 이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 적용
  - ◆ 위 기간 내에 양도된 자산의 경우 '94년 12월 31일 이전 소유 기간분에 대해 매년 일정률을 양도소득에서 경감
  - ◆ 경감률은 부동산의 경우 11.11%,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서 거래된 주식의 경우 25%, 기타 자산의 경우 14.28%
- (예) 부동산의 경우 '85년 12월 이전에 취득했다면 양도금액 전액 세액 면제, 주식은 '91년 12월, 기타 자산은 '88년 12월이 면제점

- 최소 3년 이상 실거주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주택 구입비용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 과세

□ 소득금액의 산정

- 일반소득과 자본소득에 해당하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일반소득과 자본소득을 각각 산정하며 결손금 발생시 4년간 이월 공제하여 차기년도 소득에서 결손금을 차감함

□ 인적 공제 : 일반소득에서부터 우선 공제 후 자본소득에서 공제

○ 본인 공제

- €5,550를 기본 공제하고 납세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6,700,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8,100 공제

○ 직계 비속 공제

- ① 25세 이하 미혼 자녀 ② 나이와 상관없이 장애인 자녀 ③ 연간 소득이 €8,000 이하이며 함께 거주하는 피후견인·위탁 아동의 경우 자녀 공제 대상에 해당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자녀 수	소득 공제액
첫째 자녀	€2,400
둘째 자녀	€2,700
셋째 자녀	€4,000
넷째 자녀 이하	€4,500
3세 이하 자녀의 경우 €2,800씩 추가공제	

○ 직계 존속 공제

- 연간 소득이 €8,000 이하인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 존속 공제 대상이 되며 65세 이상 €1,150, 75세 이상 €2,550 공제

□ 기타 공제

○ 일반소득 기본 공제

- 일반소득의 경의 경우 €2,000를 기본 공제함

○ 연금납입액 공제

- 다음을 한도로 연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

Min[①, ②]
① €10,000
②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납세자가 50세 이상인 경우 €12,500와 50%

□ 과세표준 및 세율

○ 일반소득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년7월)	세율 ('15년7월~ 12월)	세율 ('16년 이후)
€12,450 이하	20%	19.5%	19%
€12,450 초과 ~ €20,200 이하	25%	24.5%	24%
€20,200 초과 ~ €35,200 이하 ('15년은 €34,000)	31%	30.5%	30%
€35,200 초과 ~ €60,000이하	39%	38%	37%
60,000 초과	47%	46%	45%



○ 자본소득 세율

과세표준	세율('15년)	세율('16년 이후)
€ 6,000 이하	19.5%	19%
€ 6,000 초과 ~ € 50,000 이하	21.5%	21%
€ 50,000 초과	23.5%	23%

□ 주요 세액공제

- (주택구입세액공제) '13년 1월 이후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을 두어 '13년 이전 구입한 주택은 €9,04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공제) 법정기부금의 경우 과세표준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0%를 세액공제

다. 기타 사항

□ 배우자 합산 과세제도

○ 의의

- 일반적으로 개인과세가 원칙이나 일방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부부의 경우 개인과세나 배우자 합산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이 적어지는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

○ 적용 방법

- 본인 공제 € 5,550와 배우자 소득 공제 € 3,400을 합한 € 8,950 만큼 기본 인적 공제를 받게 됨
- 1) 소득금액 산정 시 배우자 소득 공제분 € 3,400를 먼저 공제 한 후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정 (㉠)

- 2) 본인 공제분인 €5,550에 기본세율인 20%를 적용한 금액 €1,110을 ①에서 차감하여 최종 결정 세액 산출 (②)
- 3) 배우자 합산 과세제도 적용 시의 세액 ②와 개인 과세 시의 세액을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 선택 가능
- 본인 공제분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결정 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부와 저소득부, 개인 간 형평성 제고

□ 조세특례제도 (Special Tax Regime)

○ 의의

- 다국적 기업 등에 고용되어 스페인에 파견된 다음의 외국 근로자의 경우 개인 소득세와 비거주자 소득세 중 선택하여 납부 가능
- 고정 사업장에 파견된 외국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로 과세할 경우 세율이 20%~47%인데 반해 비거주자로 과세 시 24%의 세율로 과세되어 납세자에게 유리함

○ 적용 요건

- ① 스페인 파견 이전 10년 동안 스페인에 거주하지 않은 자
- ② 노동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스페인에 파견된 자
- ③ 스페인에 파견되어 스페인 내에서 실 근무를 하는 자
- ④ 모기업의 소재지가 외국이며, 스페인 내 고정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자

○ 세율

- 소득금액이 €600,000 이하인 경우에는 24%, €600,000 초과인 경우에는 47%('16년 이후 45%)의 세율로 과세

○ 신청방법

- 조세특례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스페인에서 근로 시작 후 6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서(Form 149)를 제출해야 함



## 라. 신고 세부 사항

### □ 신고와 납부

#### ○ 신고 기한

- 소득세 납세자는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해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서(Form 100)를 제출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함
- Electronic Office 시스템으로 인터넷상으로도 소득신고서 제출이 가능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근로소득금액이 €22,000 이하인 자는 소득세 신고 의무 면제
- 신고는 개별 신고가 원칙이나 가족의 경우 함께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납부 세액 상계 가능

#### ○ 납부

- 소득세 신고와 함께 납부가 원칙이나 납부 세액의 60%를 6월까지, 나머지 40%를 11월 5일까지 분납 가능 (Form 102)

### □ 가산세

#### ○ 가산세율

- ① 3개월 까지 5%, ② 6개월까지는 10%, ③ 1년까지는 15%, ④ 1년 초과분은 20%의 가산세 부과
- 1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 5%가 추가 부과됨
- 납부 세액은 없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과태료 부과

#### ○ 가중 가산세율

- 부정행위로 기한 후 신고·무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50%~150%의 무신고가산세 부과

## 4 비거주자 소득세 (NRIT)

### 가. 개요

#### □ 납세의무자

##### ○ 스페인 원천 소득이 있는 비거주 개인

- 스페인 영토 내에서 183일 미만 체류하거나 직간접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스페인 외에 있는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 스페인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 스페인 법에 의해 설립되고 등록지와 실질적 관리장소가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됨

#### □ 세율 및 근거법령

##### ○ 근거법령

- Nonresident Income Tax Law (Law 5/2004 of March 5)
- Nonresident Income Tax Regulation Royal Decree 1776/2004

##### ○ 세율

과세표준	세 율 ('15년)
일반소득	24% (EU 혹은 EEA 회원국 거주자의 경우 20%('16년 이후 19%))
배당·이자·양도소득	20% ('16년 이후 19%)
사용료	24%
연금소득	8% ~ 40%로 누진세 구조



## 나. 과세표준의 산정

### □ 과세 대상 소득

#### ○ 사업소득

- 다음과 같이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보고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 ◆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 ◆ 작업장 · 공장 또는 창고
- ◆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 고용인을 통하여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
- ◆ 광산, 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 기타 천연자원의 탐사 및 채취장소

- 고정사업장을 통한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원천지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의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 경우 법인세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산정 시 스페인 내국법인에 적용되는 소득 · 세액 공제 및 환급, 결손금 이월 공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

-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한 소득금액에 2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기부금 및 원천징수 세액만이 세액 공제 가능

\* 스페인 영토 내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획득한 사업소득, 서비스 제공 소득, 예술인이나 체육인 소득

#### ○ 근로소득

- 스페인 영토 내\*에서 제공된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스페인 영토 밖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이라도 선박 · 항공 고용인의 근로소득을 스페인 거주 사업주가 지불한다면 이는 스페인비거주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 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수여하는 장학금은 근로소득 비과세함
- 고정사업장 이외에서 수취하는 근로소득은 각각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없이 근로소득 전부가 과세표준이 되며 24% 단일세율 적용

○ 배당·이자·사용료 소득

- 스페인 원천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없이 배당·이자소득은 20%, 사용료 수익은 24%의 단일세율로 과세됨
- 배당소득 중 다음의 경우에는 비과세

- ◆ EU 회원국의 거주자의 배당소득
- ◆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맺은 국가의 경우 역년 €1,500까지의 배당소득
- ◆ 스페인 소재 자회사에서 EU 및 EEA(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협약을 맺은 경우) 회원국 소재 모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으로의 배당소득
- ◆ Pension Plans and Fund 법에 의한 연금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
- ◆ Directive 2009/65/EC에 명시된 신탁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

- '11년 7월 1일부터 관계회사로부터 EU 회원국 소재 거주법인 혹은 고정사업장으로 지불한 사용료는 특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임대소득

- 임대소득의 경우 건물과 함께 임대한 모든 자산에 대해 과세하며 24%의 단일 세율을 적용
- 임대소득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필요비용은 공제되지 않으나 임대인이 EU 회원국 거주자일 경우에 한해 필요비용 공제 가능

○ 양도소득(건물)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후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며 비거주자 역시 '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06년 1월 20일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 일시경감규정이 적용됨



- 건물을 배우자 및 특수관계인 혹은 Code of Commerce법 제 4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 비거주자 특별 과세

○ 외국 법인의 부동산 소득

- (과세대상) '13년 1월 1일부터 조세회피처 거주자가 스페인 영토 내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특별 과세
- (세율) 자산 평가 가액에서 필요비용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이에 3%의 세율로 과세함
- (신고기한)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 하여야 함(Form 213)

○ 상금·복권당첨금

- (과세대상) 상금·복권당첨금 액수가 €2,500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으며 €2,500 초과인 경우 초과액을 과세함
- (세율) 상금·복권 당첨금 귀속 시기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다. 신고 세부 사항

□ 신고와 납부

○ 신고 의무자

- 원천징수로 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함

- ◆ 비거주자소득으로 과세되거나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대신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경우 (예 : 주식 양도소득)
- ◆ 도심 지역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간주 소득 (개인에 한함)
- ◆ 부동산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
- ◆ 과납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 신고기간

1)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신고

- 고정사업장의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은 준용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6개월 25일 이내에 법인세 신고서(Form 200)로 신고
- 고액 납세자 및 주요 기업 관리대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Electronic Office 시스템에서 전자신고 의무가 있음

2) 그 외 비거주자 소득 신고

-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해야 함
- 그 외 소득은,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4월, 7월, 10월, 1월 20일 매 분기별로 소득세 신고\* · 납부해야 하고 납부해야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고해야 함

\* '11년 1월 1일부터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가 통일되어(Form 210) 양도 소득, 자본소득도 동일한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로 신고

라. '15년 귀속 비거주자소득세 계산 사례

○ 기초 요건

- 네덜란드 모회사는 스페인에 고용인(A)을 '14년 9월 파견

A의 경제활동 내역	금 액
◆ '14년 9월~12월 근로소득	€ 12,000
◆ 네덜란드 사회보장 보험료 납입액	€ 800
◆ 스페인 은행 계좌 개설 이자수입(원천징수세액 21€)	€ 100
◆ 스페인 기업(a) 주식 양도 자본이득	€ 100
◆ 스페인 기업(b) 주식 양도 자본손실	€ -20
◆ 네덜란드 기업(c) 주식 양도 자본이득	€ 50



○ B의 소득세 계산

1) 근로소득

- 스페인 소재 사무소는 A에게 급여 지급 시 24.75%('14년 비거주자 일반 소득세율) 세율로 €2,970 원천징수하며, 비거주자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나 기본공제,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2) 이자소득

- 비거주자가 EU 회원국 거주자인 경우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므로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 €21를 환급 신청할 수 있음

3) 주식양도소득

- 스페인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만 과세되고 각각의 주식 양도소득은 상계되지 않으므로 각각의 기업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21%('14년 비거주자 양도소득세율)의 세율로 과세
- 그러나, 스페인-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르면 자본소득은 각거주국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B의 주식양도소득은 스페인에서 비과세됨

## 5 부가가치세

### 가. 개요

#### □ 과세 대상 거래

- 스페인 납세자로부터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 EU 국가로부터 만들어진 재화 및 EU 밖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재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대상이 되는 스페인 납세자로부터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

####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을 만들거나 수입한 법인 또는 개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
  -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charge System)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가세 과세의 최저한도는 없음
-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이를 총괄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은 반드시 각각의 사업자 등록 필요
- (비고정적 사업장) 비고정적 사업장 역시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
  - 이 경우에도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어 납세의무자는 재화 및 용역의 수령인이 해당
  - 또한 비고정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스페인 내의 세무대리인을 임명이 반드시 필요



- (디지털 경제 관련 과세) 스페인은 최근의 법령개정을 통해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을 변경
  - '15년 1월부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는 기존의 '생산지국 과세원칙'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변경
  - 또한 '15년 3월 스페인 세법위원회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등의 인터넷을 통한 구매 및 판매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기본통칙(V1029-015)을 발표하여 비트코인을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며, '기타유통증권(Other Negotiable Instrument)'으로 분류
    - \* EU국가 중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벨기에 등은 이미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EU VAT Directive 2006/112/CE에 기반함

□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 세율 구조

세 율	주 요 대 상
21% (표준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에 적용</li> </ul>
10% (경감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료 등의 음식</li> <li>◆ 안경 및 콘택트렌즈 및 일부 의료장비</li> <li>◆ 전용주택(Residential Dwellings)</li> <li>◆ 교통서비스 및 식당</li> <li>◆ 폐자원 수집</li> </ul>
4% (초경감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식료, 책, 저널, 잡지 등</li> <li>◆ 의약품, 장애인을 위한 재화 및 용역 등</li> <li>◆ '11년 8월 20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된 주택</li> </ul>
0% (면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서비스</li> <li>◆ 금융서비스, 보험서비스</li> <li>◆ 우편 서비스</li> </ul>



## □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 ○ 사업자등록 신고

- (신고방법)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Form 036)를 제출한 날 사업자등록이 완료됨
- (가산금)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는 경우 €4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금부과 결정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200으로 감면

### ○ 폐업신고

- (신고방법) 폐업신고는 전자신고 및 서면신고가 모두 가능하며 신청서(Form 036)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 (공급시기) 재화의 경우 통상 구매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을 의미하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용역이 제공된 시점을 의미
  - 부수 용역이 주된 재화와 함께 공급되었다면 주된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라 부수 용역의 공급시기를 판단함
  - 통상적인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함
- (거래형태에 따른 공급시기) 특수한 거래형태에 따른 공급 시기는 개별적 사안의 종류에 따라 결정

거 래 형 태	공 급 시 기
선불 지급한 재화 및 용역	선불 지급된 시기
수입한 재화	수입일



## 나.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공제)** 납세자는 사업용으로 구입한 재화 및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이에 대한 공제가 가능

- 납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입이 발생한 시점부터 4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유효한 세금계산서, 세관신고서 등이 필요

○ **(공제하는 매입세액)** 공제하는 매입세액에는 재화 및 용역에 과세된 부가가치세, 수입된 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며, 대리납부 제도의 대상이 되는 거래도 포함

- ◆ 승용차, 승합차, 트럭 등의 구입비, 유지비, 렌트비 등의 50% (사용자가 과세 당국에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시간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더 많은 비율로 공제 가능)
- ◆ 회의 참여비용, 교육훈련 비용
- ◆ 광고료
- ◆ 사업상 용도로 사용한 전화 및 핸드폰
- ◆ 주차비의 50%
- ◆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스페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의 식비, 숙박료, 대중교통비 등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재화는 사업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도 환급 불가능

- 사업상 접대비, 사업상 선물(소액일 경우 제외), 주류 및 담배 등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재화 및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 물품이 사용된 경우 안분 방법은 다음과 같음



- ① **안분공제방식(Pro-rata Method)** : 매입세액을 면세 물품과 과세 물품의 비율로 안분해서 공제
    - 납세자의 연간 총 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의 비율을 통해 도출하며, 공제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비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작년의 값을 사용한 뒤에 사후에 수정
  - ② **직접공제방식(Direct Allocation Method)** : 투입된 재화 및 용역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과세 물품에 사용된 부분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
    - 납세자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으로 구분하며, 구분이 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안분공제방식을 적용\*
      - \* 이때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 16.3%는 17%로 적용)
    - 직접공제방식은 '13년 12월 1일 이전에는 당해년도에도 적용 가능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당해년도의 공제신청에는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의 3년의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
- **(자본재에 대한 공제)** 매입한 재화가 1년 이상 사용되며 €3,000 이상의 자본재의 경우 안분하여 공제가 가능
- 그러나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액이 조정기간 중에 10%p 이상 변화하거나 자본재를 재판매한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
  - 스페인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구입년도부터 10년간, 동산의 경우 구입년도부터 5년에 걸쳐서 공제
  - 과세 당국은 6개월 내에 그 신청의 적정여부를 판단해 지급해야하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가산세를 추가로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 및 납부

○ 부가가치세 환급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해 차액을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을 바로 환급받거나 향후 4년간의 매출세액과의 상계를 신청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절차

- (환급방식)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일반환급(General Procedure)과 특별 환급(Special Procedure)이 있으며 일반환급은 그 해의 마지막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환급 받으며, 특별환급은 매 달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 시 환급 받을 수 있음
- (신청기한) 전년도의 매출이 €3,010,121이 넘는 납세자의 경우 매달 20일 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외 분기별 신청의 경우 1, 2, 3분기는 각 분기의 마지막 달 20일까지 , 4분기 신청은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신청
- (제출서류) 부가세환급신청서(Form303)와 연간부가세환급요약서(Form390), 납세자, 또는 납세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전자서명, 스페인 은행 계좌번호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작성 · 신청
- (환급 가산세) 환급은 6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6개월이 지난 경우 소정의 이자가 추가로 지급

○ 비고정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EU 내에 설립된 사업장과 관련된 지침(Council Directive 2006/112 /EC)과 EU 밖에서 설립된 사업장\*과 관련된 지침(Council Directive 86/560/EEC)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맥락으로 환급이 가능함

\*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모나코, 노르웨이, 스위스에서 설립된 경우만 해당

## 다. 기타 사항

### □ 대리납부제도

#### ○ 의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용역을 공급받은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가 용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스페인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는 부동산 공급 등 특정한 재화에만 적용함

#### ○ 대리납부제도 관련 개정 사항

- '15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리납부제도 관련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① 스페인 과세당국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 대상 물품의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를 부여
  - 핸드폰, 콘솔게임,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컴퓨터의 공급을 하고 있는 재판매 업자들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정하여 의무를 부여
- ② 대리납부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방식과는 달리 물품을 매입하는 자가 매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세무관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
- ③ 대리납부 의무를 지닌 재판매업자에게 매출규모에 대한 고지 및 증명을 세무관서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
- ④ 관련업체가 지방세무관서에 대리납부에 관한 등록증을 접수하면 대리납부 수행능력을 보증하는 전자적인 형태의 확인서를 발급
  - 해당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써 관련 업체는 매년 갱신을 해야 함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스페인 납세자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거래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 €400 이하(특정 거래에 있어서는 €3,000)의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Simplified Invoice) 발급으로 대체가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13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현재 스페인의 공공기관과의 거래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의무화
- (수출된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수출된 재화(EU로 수출된 재화 포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 관세 당국의 세관신고서, 운송 관련 서류 등
- (타국 통화에 대한 적용) 만약 세금계산서가 유로화(€)가 아닌 타국 화폐로 발행되었다면, 스페인 은행(Bank of Spain)이 발표한 공식적인 교환비율을 통해 유로화(€)로 변환해야하며, 부가세가 과세되는 날의 환율로 적용

□ 가산세

-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의 환급 신청서를 늦게 제출했거나 부가가치세 납부가 늦어진 경우 다음의 가산세 부과
  - 첫 3달 : 5%의 가산세가 부과
  - 3달~6달 : 10%의 가산세 부과
  - 6달~12달 : 15%의 가산세 부과
  - 12달 이상 : 20%의 가산세와 가산이자가 추가적으로 부과

## 6 이전가격세제 (Transfer Pricing)

### □ 개요

#### ○ 스페인 이전가격세제의 도입과 현황

- 스페인 이전가격세제는 주로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형태로 도입·발전
- (도입) '95년 이전가격과 관련된 종합적인 국제기준으로서 OECD 이전가격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스페인에서도 '95년과 '97년 관련 입법을 통해 이전가격세제를 도입함
- (발전) '06년 EU Joint TP Forum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특수관계인과의 모든 거래에 정상 가격기준을 적용할 것을 골자하는 입법(Law 36/2006)을 통해 기존의 규율 체계를 전환
- (최근) 최근 논의되고 있는 BEPS 액션플랜을 반영하여 '14년 법인세법 상 이전가격 관련 조항을 대폭 개정(Law 27/2014 of November 27)하여 기존의 RD 4/2004에 의한 규율체계를 대체함

#### ○ 이전가격세제 근거 법령의 특징

- 스페인 이전가격법령은 국제거래(Cross-border Transactions)뿐 아니라 국내거래(Domestic Transactions)에도 적용\*

- ◆ 우리나라는 특수관계 내국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해서 법인세법 52조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되지만
- ◆ 스페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안에 규정을 두고 내국거래와 국제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해 모두 이전가격세제를 적용

#### ○ 이전가격세제 근거법령

- '15년 1월 1일 개정 법인세법(Law 27/2014 of November 27)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Article 16에서 규율되던 이전가격 관련 내용이 새로운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Article 18에서 규율됨



- 새 법인세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 중에 있어 기존의 시행령인 RD 1793/2008가 여전히 유효한 바, 위 법에서 제출서류·양별규정·세무조사·APA 절차 및 상호합의절차 등에 대해 규율

○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받는 특수관계인의 범위(CIT, Article 18.2)

- ① 기업과 주주의 관계
- ② 기업과 경영인의 관계
- ③ 주주 또는 경영인과 그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인척의 관계
- ④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두 기업의 관계
- 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어느 한 기업과 다른 한 기업 경영인과의 관계
- ⑥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 어느 한 기업과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경영인의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인척의 관계
- ⑦ 한 기업이 다른 기업 지분 중 25% 이상 소유한 경우 두 단체의 관계
- ⑧ 주주나 주주의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접·간접적으로 어느 두 회사 지분 25%를 모두 각각 보유할 경우 두 회사의 관계
- ⑨ 스페인 거주단체와 해당 단체의 해외 고정사업장들의 관계

<’14년 법인세법 특수관계자 관련 개정사항>

- (a) 특수관계가 기업의 주주에 한정될 경우 적용되는 지분율 조건을 기존 5%이상에서 25%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분율 조건 완화
- (b) 비거주 기업과 고정사업장 간 특수관계 규정을 삭제하고 비거주자 소득세법에 편입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변수 책정

○ 정상가격 산출방법

- 기존에는 전통적 거래 접근법(CUP, RP, CP)이 다른 간접적 방법보다 우선시 되었으나, 세법 개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이나 신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도록 함(Article 18.4)

구 분	내 용	지 표
비교가능 제3자 방법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질이 반영</li> <li>거의 완전히 유사한 비교대상이 있어야 적용</li> </ul>	가 격
재판매가격방법 (Resale Price Method, 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총이익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전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방법</li> <li>비교대상기업을 통해 매출총이익을 결정</li> <li>이전가격(매출원가) = 매출액 - 매출총이익</li> </ul>	매 출 총 이익률
원가가산방법 (Cost Plus Method 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총이익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이전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을 찾아가는 방법</li> <li>비교대상기업을 통해 매출총이익을 결정</li> <li>이전가격(매출원가) = 매출액 - 매출총이익</li> </ul>	
이익분할방법 (Profit Split Meth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익수준지표에 따라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출·자산기준 : 영업이익률, 자산수익률</li> <li>비용기준 : Berry ratio(비용), 가산율(원가)</li> </ul> </li> </ul>	가 격
거래순이익법 (Transaction Net Margin Method, TNM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헌도에 따라 결합이익 배분</li> </ul>	공헌도

- 벤치마킹 연구 (Availability of benchmarking / Comparative data)
  - 스페인 과세당국은 OECD 가이드라인과 EU Joint TP Forum의 결정 사항을 따르고 있으나 실무상 지역적 접근과 지역적 벤치마킹연구 (Local Comparables)를 선호함
  - 벤치마킹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로 과세당국은 이베리아반도에 위치한 기업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AMADEUS나 SABI를 활용
- 입증책임
  - 스페인에서 지배거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부합한다는 입증 책임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납세자에게 있음



□ 이전가격 신고 (Tax Return Disclosure)

○ 거래정보의 제출

- 기업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를 담은 문서 (Model 200)를 제출하여야 함. Model 200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Model 200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자의 성명(단체명)과 거주지 및 납세코드*</li> <li>◆ 특수관계의 성격</li> <li>◆ 거래의 종류, 성질(수입/ 지출) 및 규모</li> <li>◆ 정상가격 산출 방법</li> </ul>

\* 세금의 부과 및 납세를 위한 개인 또는 사업체에게 부과하는 특별한 번호로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에 해당

- 납세자와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의 경우 €100,000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정보 제출 의무를 부담

○ 문서의 제출 기한

- 납세자는 재무 및 영업상 변동사항들을 반영하여 매년 이전가격 문서를 갱신하여 소득세 신고기간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회계기간이 '14.12.31 종료되는 경우 제출기한은 '15.7.25.)

○ 문서의 작성 언어

- 허용되는 언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EU Joint TP Forum 권고 사항에 위배됨이 없어야 함. 실무상 일반적으로 영어로 작성된 문서는 수용되나 세무조사 기간에 번역을 요구받을 수 있음
- 법정 등에서 증거자료로 제출될 때에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하므로 전략적 관점에서 스페인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음



□ 이전가격 자료제출 의무화 (Documentation)

○ 제도의 변화

- (기존) 스페인 과세당국은 기업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를 제출하는 것(Model 200)과 별도로 마스터 파일(Master file)과 로컬파일(Local file)을 제출하도록 해움(RD 1793/2008)
- (법령 개정) OECD BEPS 액션플랜 13\*을 법제화하여 법인세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16년부터 일정 매출 이상 다국적 기업에 대해 국가별보고파일(Country-by-Country report) 제출 의무를 새로이 도입함

\* BEPS Action13 :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the Guidance) 과세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전가격 문서제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

○ 마스터 파일(Master file) 제출

- 다국적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담아, 다국적기업 본부차원에서 작성하여 국내법이나 조약 등을 통해 국가 간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문서
- 다국적 기업 내 모든 관계사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정보로, 이전가격 자료 요구(TP Documentation) 제출 시 다음의 자료를 함께 제출

- 그룹 소속사들의 세부명세, 전 세계 관계사 구성
- 그룹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재화, 서비스 공급망에 관한 상세정보
- 그룹 전체의 사업 활동, 영업전략, 해당 산업에서 그룹의 위상
- 무형자산 정보
- 개별 계열사의 역할, 위험부담
- 당해 납세자가 승인받은 APA 목록
- 정상가격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타 서류

○ 로컬파일(Local file) 제출

- 개별 기업 소재지국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정보로 구성되어 있는 파일로 각 현지 개별 기업별로 작성해 해당 소재지국·과세당국에 보고하고, 기본적으로 국가 간 공유 목적은 아님
- 거래내역(조달, 라이선스, 융자금), 무형자산 등의 정보를 이전가격 자료 요구(TP Documentation) 제출 시 함께 제출



○ 중소기업에 대한 간소화된 문서제출 의무 특례

- (전기 그룹의 순매출액 €45백만 미만 기업) 상기(上記) 마스터 파일을 제출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간소화된 로컬파일 제출 의무를 가짐

- ◆ 지배거래의 규모와 기본사항에 대한 설명
- ◆ 납세자와 특수관계자의 신원
- ◆ 정상가격 산출 방법
- ◆ 비교연구 변수로부터 산출된 정상가격 범위

- (전기 그룹의 순매출액 €10백만 미만 기업) 세무당국이 배포한 신고서 작성 시 로컬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마스터 파일과 로컬파일을 제출의무가 없음

○ 국가별 보고파일(CbC. Country-by-Country report) 제출

1) 제출 의무자

- ① 연간 총매출이 €750백만 이상인 스페인에 거주하는 다국적 기업의 모기업과
- ② 스페인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정사업장으로서 본점이 속한 국가가 (a) 스페인의 국가별 보고파일 제출 제도나 이와 비슷한 성격의 제도가 없는 경우, (b) 스페인 정부와 조세정보자동교환 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은 CbC 제출 의무가 있음

2) 제출 자료

- '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다음의 자료를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함

- ① 특수관계인 및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 유형별로 구분한 매출액
- ② 법인세 차감 전 이익
- ③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기납부/미납부 세액
- ④ 자본금, 이익잉여금
- ⑤ 중업원수, 인건비
- ⑥ 유·무형자산, 로열티, 이자, 서비스 사용료 등 정보
- ⑦ 스페인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회사들 목록 및 영위하는 사업 정보
- ⑧ 그 외 기타 관련 정보

### 3) 제출 기한

- 기업소득세 신고서 제출과 함께 제출하는 마스터파일과 로컬파일과 달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국가별 보고파일을 제출
  - \* 사업연도 종료일이 '16년 12월 31일인 다국적기업은 '17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별 보고 파일을 제출하여야 함

## □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동향

### ○ 개관

-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제까지 이전가격 조사를 위한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 세무조사(General Audit)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음
- 다만 조사담당자는 세무조사 시 별도로 이전가격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정상가격 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최근 들어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와 강도가 증가되는 추세임

### ○ 조사대상 및 항목의 선정

- (조사대상) 조사대상 선정은 국세청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연매출 €6천만 초과 대기업의 경우 매해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 (조사항목)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주된 점검 항목이 되며, 특히 비교 가능성 분석이나 정상가격 결정이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단계 절차나 사분위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검토
  - \* 사분위법 : 정상가격 범위를 결정할 때 상·하위 25%를 제거하고 중간에 위치 하는 가격 등을 가지고 정상가격 범위를 선정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

### ○ 최근의 세무조사 경향성

분석 기준	최근 스페인 이전가격 세무조사 경향성
산업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 내 개별 산업의 비중, 수익성, 생산구조 등을 감안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생명공학·소비재 산업·부동산·엔터테인먼트·통신·석유 및 가스·제약산업 위주로 조사가 진행됨</li> </ul> </li> </ul>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조세지역이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며 최근 조사 상대국 순위는 미국, 독일, 스위스, 영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남</li> </ul>
거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자산 거래(30%), 기업 내 서비스제공(30%), 무형자산 거래(20%) 구조조정(20%)로 나타남</li> </ul>



□ 이전가격 관련 행정

○ 국제조세원 (Oficina Nacional de Fiscalidad Internacional, ONFI)

- (설립일 및 소속) '13년 3월 본청 조사국 내
- (설립취지) 다변화·복잡화하는 국제조세분야 쟁점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됨. 국제조세원은 이전가격과 MAP, APA를 포함하여 국제조세 관련 쟁점 전반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 (인력양성) 국제조세원 설립 이후 이전가격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전개됨. 주로 외부의 경제학자나 변호사들을 교육, 채용하는 형태이며 훈련과정에서 매년 약 100여명의 전문가를 동원

연 도	'12년	'14년	'16년 계획
이전가격 전문인력 수 (ONFI 소속)	15 (0)	50 (25)	70 (40)

○ 경정결정 (Reassessment)

- 경정결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짐

- ① 외부의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보고서 상의 경정이나 가산세에 관한 사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함.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정이나 가산세는 그 자체로 법률적 효력을 갖지 않음
- ② 감사보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하는 단계

- 최근 2년 간 이루어진 이전가격에 관한 경정 중 1/4 미만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으며, 가산세 평균 금액은 증가된 세액의 25~ 50% 정도로 나타남

○ (가산세) 이전가격 자료 작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상가격 기준 위배된 거래를 할 경우 불이행에 대한 벌금 부과

- (절차) 가산세 부과에는 일반적인 세무조사 절차와는 독립된 별도의 절차가 있음

- 세무조사관은 가산세가 부과의 입증 책임이 있으며 납세자가 제시된 별도 불복 없이 가산세를 수용할 경우 가산금액의 30%가 할인됨
- (이자) 행정절차 단계에서는 가산세에 이자가 붙지 않으나 사법절차 단계부터 가산세에 이자가 부과됨

회계 연도	가 산 세
'07년~'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전가격 자료 제출이 결여되어있고 그에 대해 이전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미납세액의 50%~150%</li> <li>◆ 잘못 표기된 영업손실 및 세액공제 금액의 15%</li> <li>◆ 부적절하게 적용된 세액공제 금액의 50%</li> </ul>
'09년~'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의무불이행 자료 당 €1,500 또는 총 €15,000</li> <li>◆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정이 이뤄진 경우 조정된 금액의 15%로 하되, 이전가격 문서 미제출/부실 기재한 경우의 벌금의 2배를 최솟값으로 함</li> </ul>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빠지거나 부정확한 그룹 당 €15,000, 자료 당 €1,000 벌금을 부과 하되 Min(①, ②)를 최댓값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세 대상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10%</li> <li>② 총매출액×1%</li> </ul> </li> <li>◆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정이 이뤄진 경우 조정된 금액의 15%</li> </ul>

## □ 이전가격 전문 현지 세무회계법인 정보

### ○ 이전가격 선도기업 개요

- 최근 수 년 사이에 이전가격, APA 등 국제조세 관련 분야에 대한 스페인 과세관청의 전문성과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무 회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
- 이에 '15년 기준 스페인 현지의 수입범위, 규모,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가격 선도 회계법인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특히 가장 영향력 있는 1진 회계법인들의 이전가격 대응 관련 특성을 정리함

\* International Tax Review TPWeek(이전가격 전문매거진) World Transfer Pricing 2015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스페인 현지 이전가격 선도 회계법인 ('15년 기준)>

순 위	회계법인 명
1순위	Deloitte Abogados
	EY
	Garrigues-Taxand
	KPMG
	Landwell (PwC)
2순위	Baker & McKenzie
	Cuatrecasas, Goncalves Pereira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Grant Thomson
	Transfer Pricing Services
3순위	BDO
	GTA Villamagna
	Mazars
	Ramon y Cajal Abogados

○ Deloitte Abogados

- (구성) Juan Ignacio de Molina가 이전가격 파트 대표로 재직 중이며 Ramon Lopez de Haro가 공동 파트너임. 그 외 55명의 이전가격 전문 직원으로 구성됨
- (특성) 다국적기업의 경영관리를 지원하고 국제조세와 이전가격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고유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 전문 팀을 구성하여 특히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와 페루 시장에 주된 거래처를 둔 기업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 (특화 산업) 금융서비스, 보험, 기반산업, 소비재 및 관광산업
- (수입 케이스) 스페인 은행 Banco Santander과 같은 대기업이 주요 수입 고객임. 가장 최근에는 인증·검사·시험 전문 다국적기업을 수입하여 유럽·중동·북아메리카·아시아에 걸친 이전가격 전략을 조정한 바 있음

○ Garrigues-Taxand

- (구성) 스페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전가격 전문 대응팀을 보유한 기업 중 하나로, Angel Calleja와 Mario Ortega Calle가 공동대표로서 5명의 파트너와 40명의 직원을 둔
- (특성) 이전가격 관련 이슈와 정책을 다루는 스페인 국내 및 국제 세미나와 포럼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법적·경제적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이전가격 분야에서 독특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평이 남
- (특화 산업) '13년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에 새 지점을 오픈하여 최근 라틴아메리카 대상 수출기업들을 중심으로 고객을 유치
- (수입 케이스) Ibex 35에 상장한 대기업 중심으로 자문을 하고 있으며 25개 국에 걸친 가스·에너지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다국적 기업 Gas Natural Fenosa Group의 이전가격 관련 건 수입으로 유명함

○ EY

- (구성) 이전가격 파트는 '06년부터 EY 스페인 지부 파트너를 맡고 있는 Ramon Palacin Sotillos가 지휘하고 있으며, 그 외에 두 명의 파트너와 40명의 이전가격 전문 직원으로 구성됨
- (특성) 문서화나 APA 협상에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나 소송 절차까지 이전가격 관련 서비스 전반에 걸쳐 수입하고 있으나 특히 EY에서는 강력한 소송대응팀을 보유하고 있어 이전가격과 관련된 불복을 준비하는 데 강점이 있음
- (특화 산업) 딜로이트와 같이 스페인 대규모 다국적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하고 있으나 특히 에너지 산업, 기반산업, 금융 산업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옴

○ KPMG

- (구성) 3명의 파트너와 2명의 상무이사 및 45명 이상의 직원들로 구성



- (특성) 현재 KPMG는 스페인 세무청(AEAT) 출신 국제조세 및 이전 가격분야 권위자인 Carolina del Campo\*를 영입하여 관련 업계에서 경쟁력이 부각됨

\* '12년 8월부터 세무청 국제조세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국제조세 관련 OECD 회의 (WP6, WP10, Global Forum, CFA)에서 세무청 대표로 활동

- (특화산업) 무형자산이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가 큰 블루오션 분야들을 다수 수입

○ Landwell (PwC)

- PwC와 제휴한 스페인 회계법인으로 전국에 걸쳐 20개 지부를 두고 주로 이동통신, 산업재, 건설이나 부동산, 통신산업 분야가 중점 고객임

□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

- (의의) APA란 앞으로 3~5년간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간 상호 협상을 통해 사전에 확정하고 과세당국이 모·자회사에 대해 이전 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국제조세 행정제도를 의미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

- APA란 앞으로 3~5년간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간 상호 협상을 통해 사전에 확정하고 과세당국이 모·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 조사를 면제하는 국제조세 행정제도를 의미
- 기업은 합의된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과세당국에 의한 이전가격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 과세당국 역시 이 제도를 통해 인력, 비용이 적게 들이고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줘 외국계 기업의 국내 자본유치를 위한 걸림돌제거, 짧은 시간 내에 외국기업에 대한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존재

- 스페인의 APA는 칙령(Royal decree)에 근거규정이 존재하며 일방(Unilateral), 쌍방(Bilateral), 그리고 타국가의 과세당국이 참여하는 다방향(Multilateral) APA가 모두 가능



- 관련규정은 스페인 법인세법 16조(Article 16 of the Corporate Income Tax Law)와 법인세법 규정 제4장(Chapter VI of Corporate Income Tax Regulations)에 존재
  - 신청비용(Filing fee for APAs)은 무료이며, 스페인 과세당국은 APA관련 데이터를 비공개하지만 일방 APA 및 쌍방 APA 성공률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파악
- (사전 절차) 과세당국에 해당 거래에 적합한 정상가격 결정 신청을 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정식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음
- 정상가격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 자료, 해당 거래를 설명하는 자료 등이 요구되며,
  - 과세당국은 사전 절차 신청으로 인해 제출된 최초 신청서(initial application)를 반드시 분석하고 관련 내용 중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고려해서 신청의 적부를 판단
  - 이러한 사전 절차는 선택사항이며, 과세당국은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에 대해 알려야 함
- (절차의 개시) 정상가격의 결정에 대한 신청서 제출
- 사전 절차를 거친 후, 신청자는 정상가격 결정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러한 신청서에는 정상가격원칙\*(Arm's-length Principle)에 의해 기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정상가격원칙에 대한 규정(법인세법 Art.18.1) 원문은 다음과 같음
- The transactions between associated persons or entities should be assessed at their arm's length price, being this understood as the price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between unrelated parties in free market conditions.
- 전문서비스회사 역시 법률에 정해진 이익률과 다른 값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 신청 과정에서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신청서 사전작성제도(Pre-filling)가 도입



- (기각 사유) 세무당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APA 신청을 기각
  - 제안된 APA 신청서가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명백히 부족한 경우
  - 제안된 정상가격이 과거에 신청이 거부되었던 정상가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 기타 제안된 정상가격을 기각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
- (절차의 진행) 세무당국은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설명 및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이에 대해 요청이 가능
- (절차의 기한)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추가적으로 제출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가능
  - 칙령에 의하면 심사는 최대 6개월의 기한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 가능
  - 하지만 평균적인 소요시간은 일방 APA의 경우 6~9개월, 쌍방 APA는 18~24개월 정도 소요
- (절차의 종료 및 후속절차)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APA 절차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결함

- ① 납세자가 신청한 제안이 승인된 경우
- ② 납세자의 제안이 기각된 경우
- ③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부분이 변경된 경우

- APA신청이 과세당국에 의해 최종 승인된 경우 납세자는 다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당해년도의 법인세 및 비거주자의 소득세의 환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

- APA가 적용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관련 서류
- 정상거래가격이 적용된 가격, 값
- 신청서에 사용된 자료 중 경제적 상황의 변동으로 받은 영향에 대한 설명
- APA신청과 관련 있는 과세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정상가격이 적용된 가격, 그리고 APA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와 아닌 거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등



##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만약 납세자의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한 상고는 불가능하며, 보통의 경우 납세자는 과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을 하여 다시 제출을 하게 됨
- (APA의 유효기간) 개정된 관련 법률(Law 36/2006)에 따라 APA의 효력은 앞으로의 4개 과세기간 동안 유효하며(개정 전의 경우 3개 과세기간)
  - APA가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환급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직전 과세기간의 거래에도 가능
  - 따라서 총 6개 과세기간(6년) 동안 승인된 APA규정이 적용
  - 승인된 APA규정은 마지막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6개월 전에 과세당국에 그 기간의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승인된 이후 경제적 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정신청도 가능

### 스페인 APA 문의

- ◆ 성 명 : Nestor Carmona
- ◆ 소 속 : Head of the International Taxation Office  
Spanish Tax Agency(AEAT)
- ◆ 전화번호 : + 34 91 568 07 077
- ◆ 팩 스 : + 34 91 568 09 09
- ◆ 이 메 일 : onfi@correo.aeat.es
- ◆ 사 무 실 : Paseo de la Castellana 108, Planta 5. 28046 Madrid

## □ 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 ○ 의의

-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의 부과에 있어서 조세조약의 적용 등에 관하여 조세 당국과 체약상대국간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 협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제도

### ○ 특징

- (근거법령) Royal Decree 1794/2008를 통해 이중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 절차적 규정 마련



- (합의방법) 상호합의는 크게 ① 조세조약 체결국 간 과세문제의 경우 OECD 모델조세조약 제25조에 의한 합의 절차를 준용하여 해결, ② 조세 조약 미체결국 간 과세문제의 경우 EU 중재위원회를 이중과세 분쟁 해결 기관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 EU 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재위원회가 양당사자를 구속하는 중재안을 제시

○ 상호합의 절차

1) 상호합의절차 개시의 신청

- 스페인의 국민·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스페인에 사업장을 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만 해당)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 가능

2) 신청을 받은 과세당국은 계약상대국의 권한있는 과세당국(C.A. Competent Authority)에 다음의 사항 통지

- ① 신청인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 ② 계약상대국의 국가식별번호
- ③ 해당 과세결정에서 해석의 문제가 되는 조세조약 조항
- ④ 관련된 과세기간의 명시
- ⑤ 사건의 배경과 구체적 관련사실
- ⑥ 납세자 또는 특수관계자에 의해 제기된 사건과 관련된 행정부 및 법원의 결정과 청구에 관한 세부사항
- ⑦ 합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보나 모든 서류를 과세당국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내국법인의 약속

3)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① 상호합의를 통해 적용 가능한 합의안이 이미 도출되어 있는 경우
- ② 상호합의절차 적용 대상이 아닌 과세결정에 관하여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을 한 경우
- ③ 조세조약상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④ 납세자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이용하려는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

4) 상대채약국은 합의개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오류수정이나 관련 서류의 보완을 과세당국에 요구할 수 있음

5) 상호합의 개시

- 과세당국이 상호합의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수정·보완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에 상호합의 개시

6) 상호합의절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료됨

- ① 신청인이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② 과세당국과 채약상대국 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당국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 ③ 과세당국과 채약상대국 간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7) 상호합의결과의 통지

- 과세당국은 상호합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결과를 수용 또는 거부 할 수 있음
- 신청인이 상호합의결과를 거부하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해당 사실을 채약상대국 권한있는 과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함

8) 상호합의결과의 시행

- 상호합의절차가 종료된 경우 과세당국은 1달 이내에 상호합의결과를 시행하여야 함

스페인 MAP 문의

- ◆ 성 명 : Ms. Roberta Poza
- ◆ 소 속 : Deputy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Taxation  
General Directorate for Taxation  
Ministry of Finance and Public Administration
- ◆ 전화번호 : + 34 91 595 80 85
- ◆ 팩 스 : + 34 91 595 80 03
- ◆ 이 메 일 : fiscallidad.internacional@tributos.minhap.es
- ◆ 사 무 실 : C/ Alcalá 5 CP : 28014 Madrid



<사례 1. 이전가격 요구자료규정은 위헌인가?>

- ◆ 판 결 일 : 2013년 7월 11일
- ◆ 사건번호 : 145/2013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 ◆ 소송대상 : 법인세법 제16조의 위헌 여부
- ◆ 결 과 : 합헌(법 개정 불필요)

(1) 사건의 개요

- 스페인 법인세법은 이전가격 요구 자료 규정(TP Documentation)이 있어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간 거래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불이행할 시 가산금이 부과됨
- 스페인 대법원은 요구 자료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법률이라고 판결한 바, 법인세법상 요구 자료 규정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2) 법적 쟁점 및 판결

- 법인세법상으로는 자료 및 정보의 충분성·정확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러한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나 시행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법률위반행위 판단을 광범위하게 규정함
- 대법원은 해당 이전가격 요구 자료 규정이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최소필요 기준은 법으로 정한 후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법률이라 판결
- 헌법재판소는 행정법의 경우는 형법과 달리 명확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필수적인 위반사항은 법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에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헌법률로 볼 수 없다고 판결

(3) 판결의 시사점

-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하고 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여야 함. 이에 법률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지 못하고 이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법인세법 제 16조를 위헌으로 볼 소지는 있으나 법률에서 필수적 사항은 규정했는 바, 이 자체를 위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해 법을 준수하는 것이 타당

<사례 2.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원가가산방법의 적정성 여부>

- ◆ 판 결 일 : 2012년 1월 12일
- ◆ 사건번호 : 1626/2008 대법원 (Supreme Court)
- ◆ 소송대상 :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적용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 ◆ 관련국가 : 스위스
- ◆ 결 과 : 납세자 주장 기각

(1) 사건의 개요

- 스페인 자회사와 스위스 모회사 간 ① 자회사가 모회사의 상품을 생산·포장 대가로 3.3% mark-up을 더한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기로 한 생산 계약과 ② 모회사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여 매출의 2%의 수수료를 받기로 판매대리 계약을 맺음
- 스페인 자회사는 모회사 간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신고함

(2) 법적 쟁점 및 판결

- 스페인 자회사와 스위스 모회사간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해당하는바 해당 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인 원가가산방법에서 자산판매자 및 용역 제공자의 통상이윤을 적절하게 산출하여 가산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임
- 이에 대법원은 해당 거래에서 적용한 mark-up율과 수수료율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보다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여 해당 거래에 적용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결

(3) 판결의 시사점

- 이전가격 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립기업 간 거래 중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찾아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하나, 비교가능성 개념이 상대적인 바, 비교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음. 과거 스페인 세무 당국은 비교대상 거래를 국내 거래로 한정해 판단했으나 최근 해외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남
- 납세자들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건을 신중히 정해야 하고 미리 제3자와의 거리와 차이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고 방법론적으로 정확한 비교근거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사례 3. 거래의 형식 VS. 실질>

- ◆ 판 결 일 : 2013년 10월 3일
- ◆ 사건번호 : 142/2013 (TEAC)
- ◆ 소송대상 : 특수관계법인 간 상표 거래 간주의 적정성 여부
- ◆ 결 과 : 일부 국가 승

(1) 사건의 개요

- 스페인 소재 음료유통업자는 ① 스페인 법인, ② 스위스 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으며 음료의 포장, 유통, 판매를 위해 이들 법인들의 상표를 수수료나 로열티 지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맺음
- 이러한 과정에서 해당 납세자는 관련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음료를 고정 가격과 조건으로 구입하였는데 해당 거래의 세무조사 결과 세무당국은 음료 농축액 거래에 상표 사용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납세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과세함

(2) 법적 쟁점 및 판결

- 스페인 세법에 의하면 재화거래는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간주하는 바, 특수관계인 간 수수료 및 로열티 무상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음료 거래에 해당 상표 이용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임
- 또한 세무당국의 Secret Comparable(이전가격 과세 시 과세당국이 비교대상 거래를 사용하고 그 정보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의한 과세결정이 적절한지 문제됨
- 경제행정심판원은 비록 거래의 형식이 음료농축액 거래라 하더라도 제 3자와 거래에서는 상표의 사용에 대한 대가 수취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거래에는 상표의 사용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 그러나 조사이전에 입수할 수 없는 당국만이 가지고 있는 비교 대상거래를 이용해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부적절하다고 판결

(3) 판결의 시사점

- 거래의 형식을 불문하고 해당 거래의 실질을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판단하여 과세 결정을 내린 사례를 보아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실질을 항상 유념해야 함



## 7 기타 국제조세 관련 추가 이슈

### 가.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ion)

#### □ 개요

- (의의)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간에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공제해주나, 배당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차입금의 형식으로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려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
  -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과 동일한 제도
- (도입) 스페인 법인세법에 과소자본세제 근거 규정이 존재하며 '92년에 처음으로 시행
- (특징) 과소자본세제 적용 방식은 ① 공제가 가능한 차입금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 ② 공제가 가능한 이자비용의 규모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으나 스페인은 최근 ① 방식에서 ② 방식으로 개정하여 시행
  - \*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국외재배주주의 지급 보증에 의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 시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비용은 손금산입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 (개정) 스페인은 '12년 3월 30일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 Royal Decree-Law 12/2012를 통해 과소자본세제를 포함한 법인세법 관련 개정사항 시행



## □ 과소자본세제의 특징

### ○ 개정 전 과소자본세제의 특징

- 법인의 자기자본과 부채의 비율(D/E)\* 비율이 3이 넘어갈 경우 과소자본세제의 대상으로 판단하여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손금 산입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

\* D는 25%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모회사로부터의 차입금이고 E는 모든 자기자본이 해당

- 이는 EU에 소재한 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그 외에 소재한 회사에만 적용되지만,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회사의 경우는 제외

### ○ 과소자본세제의 개정

- (공제불가능 조건 도입) 특수관계법인 간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자비용 공제를 남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 차입 이자는 공제가 불가능함

- ◆ 외국인 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20% 이상의 지분율을 소유한 스페인 외부회사로부터의 차입금
- ◆ 제3자로부터의 차입금이지만 특수관계있는 회사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은 차입금

- (공제액의 상한 도입)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종류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액의 상한선을 30%로 도입

- ◆ 이자비용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합의
  - ① 30%를 초과하여 공제가 되지 않은 이자비용은 향후 18년 간 이월 가능하고,
  - ② 30%에 미달한 이자비용은 5년 간 이월하여 공제
- ◆ 총 이자비용이 €1,000,000을 넘지 않거나 법인이 금융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개정 전후의 과소자본세제 비교

○ 개정 전후 규정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내 용	개정 전	개 정 후
특수관계법인 간의 차입에 대해서만 적용	○	×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히 적용)
대출법인이 스페인 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	○	× (대출 법인의 국적과 무관히 적용)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이월	×	○ (18년 간 이월해서 적용 가능)
규정적용의 하한선 존재	×	○ (이자비용 €1백만 이하시 전액 공제)
미달된 부분에 대한 이월	×	○ (5년간 이월 가능)
초과된 부분에 대해 배당금으로 간주 여부	○	×(특수관계법인은 조정 시행)

나. 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 개요

- (의의)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제도
  - CFC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와 동일한 취지를 가진 제도임
- (도입) 스페인은 자국의 국제조세제도의 보완을 위하여 '95년 1월부터 CFC 제도를 적용
- (근거법령) 법인세법(CIT) Art. 107와 개인소득세법(PIT) Art. 91에 법적 근거를 두며 유보소득으로 간주하는 수동소득(Passive Income)을 법에 열거하여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적용 세부사항

○ 적용요건

- ① 내국인이 피지배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② 해외 실체가 위치한 관할권의 세율이 스페인의 현행 세율의 75% 미만인 경우

\*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이 30%에서 '15년 28%, '16년 25%로 인하됨에 따라 관할권 최저세율요건이 22.5%에서 21% / 18.75%로 인하

○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종류

- 법에서 열거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으로 보는 수동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 부동산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액
- ◆ 자산 및 주식의 양도소득
- ◆ 자본대여소득
- ◆ 파생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 금융, 보험 및 기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14년 CFC 규정 주요 변경 내용

- 스페인 정부는 BEPS 액션플랜3을 반영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단순 조세 회피 행위 제제를 위해 CFC 규정을 개정함

①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수동소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장

- ◆ 자본화와 보험거래의 실질적 수혜자가 내국인인 경우의 소득
- ◆ 피지배외국법인 소유가 아닌 지적재산권, 피지배외국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산업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 ◆ 사업활동과 무관한 기술원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사업활동과 무관한 동산, 사업체, 광산 등의 임대소득
- ◆ 이미지 저작권 소득

- ② 기존 법인세법에서는 수동소득이 피지배외국법인 소득의 15% 미만일 경우 CFC 적용을 배제했으나 법인세법 개정으로 모회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소득의 경우 수동소득 산정에서 배제
- ③ 피지배외국법인이 해외에서 실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수동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유보소득으로 보아 모회사의 소득으로 과세

○ 유보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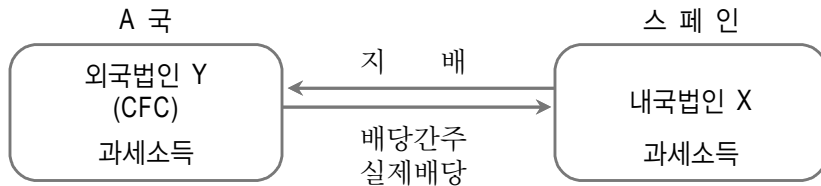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실제로 배당을 지불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피지배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CFC 규정의 적용 배제

- 1) 다음의 피지배외국법인 주식의 배당·양도소득
  - ① 피지배외국법인이 최소 5%이상의 제3의 해외 자회사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 ② 피지배외국법인이 제3의 해외 자회사의 경영·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 ③ 제3의 해외 자회사 소득의 최소 85% 이상이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인 경우
- 2) 다음의 금융, 보험 및 기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 ① 대역자와 대출자가 스페인 산업 코드 제42조로 분류되는 동종 기업 그룹일 경우
  - ② 대역자 소득의 최소 85% 이상이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인 경우
  - ③ 대출자와 특수관계인인 대역자가 스페인 비거주자인 경우
- 3) 수동소득이 피지배외국법인 소득의 15% 미만일 경우
- 4) 해외실체가 EU나 EEA 관할권 하에 위치하여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 CFC 과세 체계



<전제조건>

- Y법인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100발생(추후 50 배당, X·Y법인 모두 다른 소득 없음)
- X법인은 Y법인의 100% 주주
- 스페인(전세계소득 과세) 법인세율 28%, A국(원천지국 과세)의 법인세율 10%
- A국과 B국의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은 이자소득에 대해 10%로 원천징수

<A국>				<스페인>				비 고
	구분	과표	세액		구분	과표	세액	
소득 발생	법인세 (Y)	100	10	배당 간주	법인세 (X)	100	28-10 =18	· 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
실제 배당	원천세 (X)	50	5	실제 배당	법인세 (X)	0	-5	· 익금불산입 · 직접외국납부 세액공제 적용

\* 투자자의 거주지국 세율에 따라 이자소득 100에 대해 최종납세액은 28로 유지

**8** 기타 세금

가. 국세 - 직접세

□ 상속·증여세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ISD)

○ 적용 법규

- 상속·증여세는 Law 29/1987에서 규정됨
- 상속·증여세 부과권한과 관련하여 사인증여(Mortis Causa)의 경우 피상속인의 거주지 자치법규가, 생존 중 효력이 있는 증여(Inter Vivos)의 경우 수익자의 자치법규가 적용

○ 납세 의무

- 스페인 거주자의 경우 상속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비거주자의 경우 스페인에 위치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의 상속 증여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

○ 과세표준 계산과 공제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이전된 순자산가치의 합계로 산출되며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 ① 재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사업이나 기업, 단체에 대한 이권 및 사용권이 사인증여(Mortis Causa)된 경우로서 수익자가 해당 자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자산의 심각한 가치손상을 가져오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증여된 금액의 95%를 과세표준에서 삭감
- ② 당사자의 생존 중 효력이 있는(Inter Vivos) 이익의 이전으로서 유증자가 65세 이상이고 영구적인 장애가 있으며, 경영권 이전 후 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경우 이전된 이익의 95%를 과세표준에서 삭감

○ 세액의 산출

- 상속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피상속인(유증자)과 상속인(수증자)의 관계 정도를 고려한 계수를 반영한 수치에 누진세율을 곱해 산출

<상속 증여세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7,993.46 이하	7.65
€7,993.46 초과 ~ €15,980.91 이하	8.50
€15,980.91 초과 ~ €23,968.36 이하	9.35
€23,968.36 초과 ~ €31,955.81 이하	10.20
€31,955.81 초과 ~ €39,943.26 이하	11.05
€39,943.26 초과 ~ €47,930.72 이하	11.90
€47,930.72 초과 ~ €55,918.17 이하	12.75
€55,918.17 초과 ~ €63,905.62 이하	13.60
€63,905.62 초과 ~ €71,893.07 이하	14.45
€71,893.07 초과 ~ €79,880.52 이하	15.30
€79,880.52 초과 ~ €119,757.67 이하	16.15
€119,757.67 초과 ~ €159,643.83 이하	18.70



과 세 표 준	세 율(%)
€ 159,643.83 초과 ~ € 239,389.13 이하	21.25
€ 239,389.13 초과 ~ € 398,777.54 이하	25.50
€ 398,777.54 초과 ~ € 797,555.08 이하	29.75
797,555.08 초과	34.00

○ 세법상 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상속·증여세

- 세법상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가까운’ 상속인(수증자)의 경우에 한하여 많은 부분의 상속 증여분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납부세액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수준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예 : Madrid)

□ 재산세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IP)

○ 적용 범위 및 납세의무

- 재산세는 Law 19/1991에서 규정됨
- 스페인에 거주하는 개인은 매년 12월 31일 국내외에서 보유한 총자산에 대해 재산세 납세의무를 가지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소재하거나 국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만 재산세 납세의무를 가짐

○ 면세 대상 자산

- 스페인 역사 유물, 일정 금액 이하 예술품·골동품·가정용 가구, 예술가 본인의 작품, 납세자의 주된 주거지로서 €30만이하 자산,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한 등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음

○ 적용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 167,129.45 이하	0.2
€ 167,129.45 초과 ~ € 334,252.88 이하	0.3
€ 334,252.88 초과 ~ € 668,499.75 이하	0.5
€ 668,499.75 초과 ~ € 1,336,999.51 이하	0.9
€ 1,336,999.51 초과 ~ € 2,673,999.01 이하	1.3
€ 2,673,999.01 초과 ~ € 5,347,998.03 이하	1.7
€ 5,347,998.03 초과 ~ € 10,695,996.06 이하	2.1
€ 10,695,996.06 초과	2.5







## 다. 지방세

### ○ 근거 법령

- Royal Decree 2/2004, of March 5 에 의해 승인된 개정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세금을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부과할 수 있음

### ○ 지방세의 분류

#### 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 부동산세(Impuesto sobre Bienes Inmuebles, IBI)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장부상 가치에 따라 부과
- 경제활동세(Impuesto sobre Actividades Economicas, IAE)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01년부터 대부분의 납세자는 면세되었으며 현재 총매출액 €1백만 이상의 기업들만 부담

#### ② 기타 지방세

- 도시지역 가치상승에 대한 세금(Impuesto sobre el Incremento del Valor de los Terrenos de Naturaleza Urbana, IIVTNU) 도시지역 부동산 양도 시 취득시점부터 판매시점까지 가치상승 분에 대해 부과
- 자동차세(Impuesto sobre Vehiculos de Traccion Mecanica, IVTM) 마력에 따라 부과
- 건설세(Impuesto sobre Construcciones, Instalaciones y Obras, ICIO) 공인 건축설계사의 견적에 기반한 건설예산에 따라 부과













## 나. 조세 불복절차

### □ 개요

#### ○ 법적근거

- 스페인 조세불복 절차는 조세기본법(General Tax Law 58/2003) 제5편 행정을 통한 수정(Revisión en vía Administrativa)에서 규율함

#### ○ 스페인 불복절차 특징

- 조세 불복 절차는 행정심리 절차와 사법소송 절차로 구분되며 세법은 조세 소송의 전제로서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를 요구
- 조세불복 행정심리는 임의절차인 ① 특별검토, ② 이의신청과 필수절차인 ③ 행정심판이 있고 조세소송은 심판을 거쳐 1심 행정법원에 제기되며 4심까지 항소 가능

### □ 특별검토

#### ○ 의의

- 과세 결정의 무효, 취소, 철회, 수정, 환급의 직권시정을 구하는 제도로 행정의 자기통제를 위한 제도임

#### ○ 특별검토 사유

- (무효) ① 기본권 침해 ②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과세 결정 ③ 실행 불가능한 처분 ④ 형식적 절차 규정의 명백한 위반인 경우
- (철회) 과세결정이 법률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경우
- (수정) 서류상 잘못된 기재된 사항이나 세액 계산의 오류가 있는 경우
- (환급) ① 중복 납부 ② 납부할 세액을 초과한 납부 ③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결정기간

- 무효사유인 경우 검토의 신중함이 필요하므로 결정기간은 특별검토를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이며 그 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6개월임
- 결정기간이 지나도록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간주거부로 봄

○ 결정효력

- 특별검토 결정일로부터 결정의 효력을 가지며 세액의 환급 결정 있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가산 이자를 더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이의신청

○ 의의

- 경제행정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조세 처분을 행한 처분청에 직접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직권시정을 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됨
- 강제 절차가 아닌 임의 절차로 청구인은 세무당국에 직접 이의신청을 거쳐 경제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경제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신청 절차

- (신청기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이의신청
- (결과회신) 과세당국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이의신청 결과 회신
- (간주거부) 이의신청 후 1달이 지나도록 과세당국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간주거부로 보아 경제행정심판원에 심판 청구 가능

## □ 경제행정심판

### ○ 의의

- 조세행정 처분에 불복하거나 향후 필요한 경우에 행정 분쟁 절차를 통해 사법적 절차를 밟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수단

### ○ 담당 기구 : 경제행정심판원(Tribunales Economico-Administrativo)

- 스페인 경제행정심판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기능적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는 재정 및 공공행정부 산하로 경제행정적 이의신청을 해결
- 중앙에는 중앙경제행정심판원(TEAC), 17개의 자치주에는 지역경제행정심판원(TEAR), 세우타와 멜리야에는 지방경제행정심판원(TEAL)소재

### ○ 심판 종류

#### 1) 지방·지역경제행정심판원을 통한 불복

- (제기기준) 이의신청 액수가 €150,000 이하인 경우 TEAC나 TEAL에 심판 제기

#### 2) 중앙경제행정심판원을 통한 불복

- ① (단독심판) 이의신청 액수가 €150,000 초과이거나 세무청 본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인 경우 TEAC에 심판 제기
- ② (재심) 지방·지역경제행정심판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여 제기된 청구를 해결
- ③ (특별심리) 세법 기준이나 법리의 통일성의 원리를 다루는 유일한 심판원으로 중앙경제행정심판원의 재결에 반대하여 개입된 원리에 대한 특별심리(Recurso Extraordinario) 해결 권한을 가짐

#### 3) 간편심판제도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약식 절차가 적용되는 간편심판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재결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됨



- ① 이의신청 액수가 €6,000이하인 경우
- ② 조세 처분의 헌법불합치 및 불법을 다투는 경우
- ③ 과세 결정 고지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 ④ 세액 계산의 오류를 다투는 경우

○ 불복 절차

- (제기기간) 과세처분을 받은 후 1달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
- (제출서류) ① 청구인 신원정보, ② 거주지, ③ 이의신청 대상 처분, ④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해명서를 공소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심리) 심판청구 한 달 내에 재판이 시작되며 경제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경우 당사자는 구두 진술을 위해 출두해야 함
- (집행정지) 심리가 시작되면 처분 집행은 정지되며 이 경우 청구인은 집행 정지를 위해 ①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보증금이나 국채, ② 보험 증명서, 연대 보증서, ③ 세법에서 정한 일정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함
- (재결) 재결기간은 행정심판 청구일로부터 1년이며, 재심이나 특별 심리의 경우 재결기간은 6개월임

○ 청구비용 및 소요기간

- 심판 청구비용은 무료이나 경제행정심판원이 청구인이 부정직한 의도로 무분별하게 심판을 청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심판 비용을 이의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함
- 소요기간은 약 3년이며 납부를 유예하기 위해서는 은행보증이 요구됨

## □ 조세소송

### ○ 의의

- 경제행정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할 수 있는 사법 절차로서 행정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기관에 대해 제기된 소송을 관장하는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음

### ○ 소송의 절차

- 처음 제기된 소송을 관장하는 일반법원과 일반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할 수 있는 대법원이 있음

#### 1) 일반법원 (Audiencia Nacional)

- (제소기한 및 소요기간) 경제행정심판원의 재결이 있을 후 2달 이내에 제소 가능하며 판결까지 약 3년 정도가 소요됨
- (금액기준) 다투고자하는 소송물의 금액 기준은 없으며 판결까지 약 3년 정도가 소요됨

#### 2) 대법원 (Tribunal Supremo)

- (제소기한 및 소요기간) 일반법원의 판결이 있을 후 2달 이내에 제소할 수 있으며 대법원에 대한 제소 시점부터 판결까지도 약 3년 정도가 소요됨
- (금액기준) 다투고자하는 소송물의 금액이 €600,00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소할 수 있음



## 다. 대리인 제도

### □ 스페인 세무대리 시장의 특징

#### ○ 국가공인 자격 제도가 없는 오픈형 세무대리 시장

- 공인자격증이 있어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이나 일본 등과는 달리 스페인에는 국가공인 세무사 자격증 제도가 부재
- 세무 상담이나 대리 업무는 특정 직업군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스페인에 거주하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이 세무대리인 으로서 세무 상담·대리 및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회계사, 변호사 등이 조세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음

#### ○ 각 조세전문가의 업무 개요

##### 1) 변호사 (Abogado)

- 변호사는 종래의 법률고문 업무와 순수 법률 활동을 모두 수행하여 세무신고에서부터 소송에 이르는 모든 세무 업무가 가능

- ① 재판 외의 법률 조언, 상담, 계약서 및 회사 정관의 초안 작성, 법적 교섭 등 : 공인회계사, 보험회사 등도 가능하므로 독점성이 없음
- ② 소송지원 및 대리 업무 등 : 변호사의 독점 업무에 해당

##### 2) 공인회계사 (Economista)

- 공인회계사는 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독립된 보고서를 제출하여 지분을 평가하거나 자산의 증감에 관여할 수 있고 ② 파산관재인이 될 수 있으며 ③ 회계장부 작성 ④ 회계감사 ⑤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음

## □ 세무대리인의 선임

### ○ 예외적인 필요적 세무대리인 선임 제도

- 세무대리인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강제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선임이 이루어지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RDL 5/2004) Article 10에서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하는 경우를 규율

### ○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법상 세무대리인 선임 사유

- 스페인 비거주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 전 2개월 이내에 스페인 거주자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 ① 스페인에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
- ② 스페인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비용 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 ③ 특정 시설이나 작업장, 계약 체결 권한이 주어진 직원 등을 통해 스페인에서 수익을 위한 사업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④ 자산의 성질이나 수입의 크기에 따라 과세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우
- ⑤ 스페인과 과세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거주지를 둔 경우

### ○ 세무대리인의 선임과 역할

- 선임된 세무대리인은 상무등록원(Commercial Register)에 등록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세무대리인으로 간주함
- 세무대리인은 연대하여 각각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함

### ○ 위반 시 제재

- 세무대리인 선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2,000 벌금이 부과됨 (단, 과세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거주지를 둔 경우 위반 시 벌금은 €6,000)



## □ 대표적인 세무대리인 단체

### (1) 조세컨설턴트연합 (Asociacion Espanola de Asesores Fiscales, AEAF)

#### ○ 설립 개요

- 세무경제인연합(REAF)과 함께 유럽세무연합(Confederation Fiscale Europeenne, CFE)에 등록된 스페인의 대표적인 조세협회로서 1967년 설립됨
-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간물이나 세미나, 정보 교환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할 뿐 아니라 정부의 세법 제·개정 작업을 돕는 역할을 수행
- '14년 기준 총 20,654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세무영업회원 4,288명과 비영업회원 15,233명으로 구성됨
- (홈페이지) [www.aedaf.es](http://www.aedaf.es)

#### ○ 가입 요건

- 법학, 무역학·경영학·경제학 기타 이와 유사한 전공의 국내대학 학위 또는 EU Directive 2005/36/EC of Sep 9와 RD 1837/2008 of Nov 8에서 인정된 외국대학 학위를 보유하여야 함
- 세무영업회원 또는 비영업회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세무영업회원 : 세무상담(tax advice)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는 회원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지거나,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없더라도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에서 중요한 세무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총회에서 인정되는 회원
- ② 비영업회원 : 세무상담을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회원. 직업활동으로서 커리어를 중단한 회원이거나 법적으로 본 단체와 결합하여 활동할 수 없는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회원 등이 이에 해당



(2) 세무경제인연합 (Registro de Economistas de Asesores Fiscales, REAF)

○ 설립 개요

- 조세전문가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88년에 만들어진 스페인 경제협회 일반위원회(Consejo General de Colegios de Economistas de España)의 특별단체로서 현재 6,500명 이상의 조세전문가가 등록되어 있고 70개 스페인 대학의 경제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음.
- 지식능력학교(Escuela de Conocimiento Eficiente, CGE)를 통해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세무경제학자포럼(Foro Fiscalidad REAF-REGAF)을 통해 세법 제·개정 제안 및 세정연구
- (RD 4/1997) Article 4에 의해 해당 단체의 회원은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와 조언을 할 수 있음
- (홈페이지) [www.reef-regaf.economistas.es](http://www.reef-regaf.economistas.es)

○ 가입 요건

- 경제학 학위를 가진 졸업생로서 동문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회계 또는 감사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어야 함

(3) 기타 단체

기타 세무전문가 단체	홈페이지
Gabinete de Gestores Administrativos Y Asesores Fiscales	<a href="http://www.gesaf.com">www.gesaf.com</a>
Consejo General de La Abogacia Espanola	<a href="http://www.abogacia.es">www.abogacia.es</a>
Consejo General de Colegios de Gestores Administrativos de Espana	<a href="http://www.consejogestores.net">www.consejogestores.net</a>
Federacion Espanola de Asociaciones Profesionales de Tecnicos Tributarios Y Asesores Fiscales	<a href="http://www.fettaf.com">www.fettaf.com</a>
Asociacion Profesional de Expertos Contables Y Tributarios	<a href="http://www.aece.es">www.aece.es</a>
Consejo General de Colegios Oficiales de Graduados Sociales de Espana	<a href="http://www.graduadosocial.org">www.graduadosocial.org</a>

# III

## 스페인 투자 정보

1. 개요 .....	98
2. 투자 동향 및 진출유망 분야 .....	101
3. 투자지원제도 .....	105
4. 스페인의 투자 형태 및 절차 .....	109
5. 스페인의 노무관리제도 .....	114



## 1 개요



### □ 투자정책에 대한 규율 체계

#### ○ 스페인 투자정책 기본 방향

- 스페인 투자유치정책은 외국인의 직접적인 투자를 우선적으로 유치해 지역 간 균등발전과 실업률 해소가 목적임
- 이에 외국인 투자자와 스페인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 유지 및 시장자유주의 구현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신고 및 해외투자 신고 절차 등을 간소화 함
- 최근 미주 및 아시아 지역 투자 자본을 적극 유치해 외국인 투자 경로를 다원화 하는 추세

#### ○ 기업 및 상업법

- 스페인의 기업법은 '10년 7월 2일 자본기업 법 1/2010을 기본으로 함
- 기타 칙령들로는 ① Royal Decree 1784/1996, ② 기업설립, 인수합병, 자산/부채 국제 양도, 기업 국제이전, 국제 송금 등에 관한 Royal Decree 3/2009, ③ '85년 8월 22일 상업법에 관한 시행령 등이 있음

#### ○ 주요 투자법

- 스페인의 투자법은 Royal Decree 664/1994를 기본으로 하며 외환관리 및 자본이동 자유화에 관한 Royal Decree 1816/1991 및 기타 후속 수정령 42/1993, 1638/1996이 있음
- 한국과는 '94년 1월 17일 투자진흥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에 서명



○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법령 주요 사항

- 1) (외국인 투자자 정의) 외국인 투자법상 다음의 경우 해외투자자로 분류됨
  - ◆ 비거주자 : 해외에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거소가 해외인 자
  - ◆ 해외소재 법인 : 등기 상 주소가 외국인 법인
  - ◆ 해외 공공기관
  
- 2) (투자의 형태) 다음 활동을 할 경우 외국인 투자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
  - ◆ 스페인 기업의 지분 매입 혹은 스페인 내 지사를 설립하거나 확장
  - ◆ 스페인 거주인(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어음 매입
  - ◆ 스페인 금융감독당국(CNMV)에 가입된 투자펀드 참여
  - ◆ 스페인 내 부동산을 €3,005,060 이상 매입
  - ◆ 스페인 내에서 €3,005,060 규모 이상의 재단, 회사 등 설립 혹은 참여
  
- 3) (외국인 투자 신고) 사후 신고가 원칙이나, 조세 피난처 지역에서 유입되는 투자의 경우 사전 및 사후신고를 거쳐야 함
  - 아래의 경우 사후 신고의무가 면제됨(조세피난처로부터의 투자를 제외)
    - ◆ €3,005,060 이하의 부동산 취득
    - ◆ 재단설립 또는 협동조합 창립
  
- 4) (감독) 경제부 산하 무역투자국(Direccion General de Comercio e Inversion)
  - 외국인투자자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지사를 대상으로 투자와 관련된 연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스페인 투자 환경

- 유럽, 중남미, 북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
  - 스페인은 유로존 5위의 경제대국이면서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해 있어 스페인을 통한 유럽과 아프리카 진출에 유리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
- 외국인 투자에 개방적인 경제여건
  - OECD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지표(FDI Regulatory Restrictiveness Index)에 따르면 스페인은 0.021점(0~1, 0에 가까울수록 개방된 경제를 뜻함)으로 58개 조사대상국 중 독일, 프랑스 등보다 우수한 9위를 기록함
- 우수한 인프라와 저렴한 인건비
  - 1) World Economic Forum '14년 국가경쟁력 지수 인프라 환경부문 9위
    - ① (철도망) 고속철도망의 경우 중국에 이어 연장길이가 14,262km로 세계 2위, 유럽 1위
    - ② (항공) 47개의 공항을 통해 연간 약 1억 6천만 여명이 187만 편이 넘는 항공편을 이용하며, ③ (항만) 46개 항구 중 3개 항구는 유럽 Top 15 석권
  - 2) 노동비용이 EU 28개국 평균보다 낮으며 노동생산성은 평균보다 높아 저비용 고효율 국가로 평가됨('14 Eurostat)
- 각종 세제혜택 및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부담
  - 스페인은 OECD 국가 중 R&D 투자에 있어 세금 혜택을 두 번째로 많이 주는 국가이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GDP의 32%) 적은 국가임



## 2 투자 동향 및 진출유망 분야

### □ 외국의 스페인에 대한 투자 동향

- '92년 외국인 투자 자유화가 이뤄진 이후 '14년 9월 누적기준 €2,937억, 순투자 €1,864억의 외국 투자자본 유치
-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던 '07년, '08년 동안에는 매년 총 투자액이 거의 €300억에 육박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9년 €124억, '10년 €122억 유치로 투자 감소
- '14년 스페인 경제는 '08년 경제위기 이후 불황을 깨고 완전한 회복세로 진입하여 '14년 1.4% 성장률 기록 및 '15년 2.7% 경제성장 예상
- 스페인의 빠른 경제회복은 저유가로 인한 무역적자 감축, 내수 회복, 시장금리 안정 및 유로존 양적완화 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금융조달 환경 개선 등에 기인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한 내수 증가와 투자 확대 전망
- '14년 경제회복으로 인한 스페인 경제 전망 낙관,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저가 매물매수, 글로벌 기업 자금 투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직접 투자 €473억 4,300만 실현
- '14년 對 스페인 투자가 활발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멕시코, 미국 순이며 중남미 국가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확대되는 추세
- 산업별로는 누계기준 금융/부동산/컨설팅(€200억), 제조업(€154억), 교통/우편/물류(€80억) 순으로 투자 집중

## □ 한국기업의 스페인 투자 동향

### ○ 개요

- (규모) 누적 투자신고금액은 총 154건, \$11억 1,772만('14년 3Q 기준)
- (특징) 한국의 對 스페인 투자 75% 이상이 '03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투자 분야 다변화와 건별 투자규모 확대 등 투자의 질이 개선되어 스페인 정부의 한국기업 유치관심도 상승

### ○ 진출업종 분석

- 종전의 對 스페인 투자는 가전3사 및 완성차, 타이어 등의 현지 판매법인과 지사 설립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운수창고업(한진해운), 에너지(SK루브리컨트), 건설업(GS건설), 항공(KAL) 등 투자분야 다변화
- 진출 업종은 건설업(33%)과 도·소매업(22%), 제조업(21%), 운수업(11%)이 대부분을 차지(금액기준)

<한국의 對스페인 업종별 투자동향 (1980~2014)>

(단위 : \$천, 건)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누 계	154	1,117,722	910,653
농업, 임업 및 어업	2	430	370
광 업	14	112,667	57,103
제조업	49	251,658	208,524
건설업	6	380,662	294,469
도매 및 소매업	33	209,257	194,341
운수업	20	100,803	100,636
숙박 및 음식점업	14	4,087	3,13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14,494	12,159
부동산업 및 임대업	5	4,235	6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39,298	39,298

<자료원 : 수출입은행, 2014.Q3 현지 법인 기준 ('15.2월 최신)>



□ 한국기업 진출 유망 분야

○ 자동차 부품

- 스페인은 유럽 2위이자 세계 11위 자동차 제조국으로서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경제위기 이후로도 자동차 메이커들의 對 스페인 투자가 지속 확대 중
- 대부분의 구매결정은 각 메이커의 본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기 제품 공급이 가능한 로컬 공급선과의 공조가 필수적으로 주요기업과의 합작, 제휴를 통한 진출 타진 가능

○ 항공우주 분야

- '13년 기준 138억 €300만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유수의 항공 제조사(Airbus Military, Eurocopter), 항공 제조물 Tier 1 공급업체(ITP, Aernnova)가 있어 부품 공급, 유지·보수를 위한 주요 기업과의 합작, R&D 투자 등으로 진출가능

○ 공공조달 분야

- 스페인 정부는 '15년 전년 대비 6.5%의 정부 공공조달 확대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경제위기 이후 정부·민간 활동이 중단된 건설 분야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스페인 정부조달 시장에서 외국기업 참여도가 크게 봐도 5%가 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직접진출 보다는 정부 납품 업체를 통한 Sub-Contractor 참가, 현지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응찰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진출 방법임



<스페인 공공조달 예산현황('14년~'15년)>

(단위 : €1백만, %)

항 목	세 목	'15년 예산	'14년 예산	변동금액	변동비율
철 도	고속도로	3,561	3,194	367	11.49
	관리·운영	585	585	0	0.00
	철 로	461	373	88	23.59
	기차 자재	266	160	106	66.25
	기 타	172	140	32	22.86
	근거리 기차	153	121	32	26.45
	소 계	5,198	4,573	625	13.67
도 로	신규건설	1154	1,148	6	0.52
	유지보수	935	818	117	14.30
	기 타	105	187	-82	-43.85
	소 계	2194	2,153	41	1.90
항 구 와 해상안전	해상출입	181.4	162.7	18.7	11.49
	육로출입	155.7	111.9	43.8	39.14
	부두항구	152	132.7	19.3	14.54
	산업단지건설	126.7	127.6	-0.9	-0.71
	소규모투자	114.2	107.5	6.7	6.23
	육지건설	54	75.9	-21.9	-28.85
	항구도시와 자연환경	43.5	26.7	16.8	62.92
	SW 및 통신	36.5	21	15.5	73.81
	기 타	97	95	2	2.11
소 계	961	861	100	11.61	
공항과 항공안전		535	559	-24	-4.29
건축·주거·임금		628	788	-160	-20.30
나머지투자		53	46	7	15.22
합 계		9,569	8980	589	6.56

<자료원 : 스페인 정부예산('14년 11월자료)>



## 3 투자지원제도

### □ 투자지원기관

#### ○ 일원화된 투자지원기관(ICEX)을 통한 투자유치 노력

- (설립) '05년 10월 스페인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기존에 산업관광무역부 소속 투자청으로 존재했던 투자 유치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투자 전문 기관인 Invest in Spain 발족
- (발전) 경제위기 이후 공공기관 효율화를 단행하면서 '12년 7월 Invest in Spain을 경제경쟁력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대외무역진흥청 ICEX (España Exportación e Inversiones)로 흡수 통합
- (최근) Invest in Spain이 ICEX로 통합되면서 세계 각국 130여개 ICEX 사무소를 통하여 정부 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일원화된 투자유치 업무를 수행

### □ 투자지원제도

#### ○ 개요

- (목적) 스페인 정부는 산업진흥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인재육성, 해외진출, 일자리 창출, 하향산업 진흥, 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광범위한 인센티브 제공
- (지원대상)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차별 없이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스페인 내 위치한 모든 기업이 투자 인센티브 수혜가 가능함

○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Law 395/2007, Royal Decree 4/2013)

- 훈련생 고용 인센티브

대 상	세 부	연간 보조금액	기 간
고용부에 구직자로 등록된 실업자	'12.7.8. 이 후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주 사회보장 기여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0명 미만 고용 사업장 : 100%</li> <li>- 25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75%</li> </ul> </li> <li>훈련생 무기직 전환시 연간 €1,500 (여성 €1,800) 보조금 지급</li> </ul>	계약기간 (실업률이 15% 이하가 될 때까지 갱신가능)

- 무기계약 고용 보조금(여성 비율이 적은 직업의 경우)

대 상	세 부	연간 보조금액 (단위 : €)		기 간
		남 성	여 성	
고용부에 구직자로 등록된 실업자	16~30세	1년 : 1,000 2년 : 1,100 3년 : 1,200	1년 : 1,100 2년 : 1,200 3년 : 1,300	3년
	45세 이상	1,300	1,500	

- 기타 무기계약 고용 보조금

대 상	세 부	연간 보조금액 (단위 : €)			기 간
특 수 상 황	소외계층	600			4년
	가정폭력 피해자	850			
	폭행 피해자	1,500			
	테러 피해자	1,500			
장애인 고 용		남성<45세	여성<45세	45세 이상	계약기간
	일반	4,500	5,350	5,700	
	중증장애	5,100	5,950	6,300	
무 기 계 약 전 환		남 성		여 성	3년
	퇴직자	500		700	
	훈련생	1,500		1,800	



○ R&D 투자 지원 (INGENIO 프로그램)

- 스페인 정부는 과학, 기술 및 비즈니스 리더십을 향상시키고 스페인 회사의 혁신을 위해 '20년까지 “R&D 혁신을 위한 스페인 전략” 실행 중
- INGENIO 프로그램을 통해 ① R&D와 IT산업에서의 인적 자원 고용 및 훈련 촉진, ② 과학 기술 연구의 질적 증가, ③ 과학 기술 연구의 국제적 능력 및 리더십 강화, ④ 과학기술 인프라 및 장비 접근성 증대, ⑤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 등을 실행

프로그램명	특 징
CONSOLIDER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우수성 달성이 목표</li> <li>• 개별연구자와 대규모 연구그룹간의 협력 증진을 위해 5~6년간 장기적 자금 지원</li> </ul>
AVANZA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사회의 구축과 스페인 경제 회복이 목표</li> <li>• IT분야 투자 희망 중소기업에게는 무이자 3년 상환 조건으로 최대 €20만까지 융자 지원</li> <li>• 대학생 및 청년에게는 무이자 60개월 상환 조건 최대 €3000 지원</li> <li>• 일반 시민에게는 무이자 36개월 상환 조건 최대 €3000 금융 지원</li> </ul>
CENIT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및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협력 증진이 목표</li> <li>• R&amp;D 및 과학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융자 지원 (연간 예산 €5백만)</li> </ul>

○ 관광부문 지원

- 관광업은 스페인 GDP의 약 6.4%를 차지하는 스페인 주요산업으로, 불황에 빠진 스페인 경제를 이끌고 있는 관광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페인 관광 계획 2020” 실행 중
- 동 계획으로 스페인 정부는 ① 관광산업의 수익성 증대, ② 관광인프라 현대화, ③ 상품다양화, ④ 신생 관광기업 장려 등을 추진

프로그램명	특 징
Emprendetur 젊은 기업가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용의 최대 100%까지 용자 (최대 €1백만 용자)</li> <li>• 스페인 거주 40세 이하의 사업가를 대상으로, 설립한지 24개월이 넘지 않은 신생기업 지원</li> <li>• 기업자산 범위 내 €1백만 이하 금액을 0.97% 고정 이자, 5년 상환, 2년 거치 대출 지원</li> <li>• 보증금 없음</li> </ul>
Emprendetur R&D 및 IT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비용의 최대 75%까지 용자 가능 (최대 €1백만 용자)</li> <li>• 스페인 거주 법적 하자가 없는 사업가 대상</li> <li>• 기업자산 범위 내 €1백만 이하 금액을 0.97% 고정 이자, 5년 상환, 2년 거치 대출 지원</li> <li>• 대출금액 35% 보증금 필요</li> </ul>

○ 지역별 인센티브

- 스페인 내 모든 기업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유럽연합이 지정한 한도 내 (고정 자산 투자액의 0~40%)에서 재정적 인센티브 수혜 가능
- 경제성장이 더딘 까나리아, 엑스트레마두라는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반면 마드리드, 바르세로나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방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 (FTZ)

○ 개요

- 스페인에는 현재 총 4개의 지방(바르셀로나, 비고, 까디스, 까나리아 제도)에 자유무역지역이 위치하며 이중 까나리아는 자유무역지역인 동시에 특별경제구역(SEC)으로도 지정됨
-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내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기업들은 관세, 부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투자혜택

1) 비고(Vigo) 자유무역지역

- 신생기업 육성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에 창업 인큐베이터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일부 지원
- \* 인큐베이터 센터 입주 가능 기업 : ① 창립 1년 미만 신생기업, ② 실현 가능한 영업 프로젝트 제시, ③ 소매업 종사 기업 제외, ④ 기존에 존재하는 기업의 지사 제외

2) 까디스(Cadiz) 자유무역지역

- 임대 및 대형부지 임대 희망 기업, 수출입 종사기업 등을 대상으로 5% ~ 30%까지의 임대료 할인 혜택을 제공

3) 카나리아(Canaria) 제도

- 자유무역지대로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바 없으나, 특별경제구역으로서 기업유치를 위해 일련의 조세혜택\*을 제공
- \* 조세혜택으로는 ① SEC 지정기업으로 선정 시, 4%의 특별 법인세 적용, ② 제조업에 종사 시 일반 법인세 중 50% 감면, ③ 자본재 투자 관련 세금 면제 등이 있음

**4 스페인의 투자 형태 및 절차**

□ 스페인 법인의 유형

회 사 유 형	주 주 수	자 본 금
주식회사	최소 1인	최소 €60,000
유럽주식회사	최소 1인	최소 €120,000
유한회사	최소 1인	최소 €3,000
신규유한회사	최소 1인~최대 5인	€3,000~€120,000



-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S.A.)**
  - (특징) 가장 일반적인 법인 형태로서 자본금을 균등으로 분할하여 출자자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 (자본금) 법정 최소 자본금은 €60,000이며 설립 당시 각 액면 주식 당 25%를 지불해야함
  - (설립요건) 설립 예정인 주식회사는 ‘스페인 신분증 번호’를 소지한 법정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NIE)를 획득해야함
  
- **유럽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Europea, S.E.)**
  - (특징) 일반 주식회사의 변형된 형태로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활동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 각 나라마다 회사를 설립할 필요 없이 유럽연합 법률만을 적용하는 통일된 관리 시스템의 기업
  - (자본금) 법정 최소 자본금은 €120,000이며 주식관련 규정은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
  
- **유한회사 (Sociedad Limitada, S.L.)**
  - (특징)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 (자본금) 법정 최소자본금은 €3,000 이상이며 설립 당시 전액 지불
  - 관련 규정은 주식회사와 비슷하나, 유한 회사는 절차가 훨씬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
  
- **신유한회사 (Sociedad Limitada Nueva Empresa, S.L.N.E.)**
  - (특징) 유한회사의 변형된 형태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설립 자격 요건을 최소화 하여 유연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음



- 그 이외에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합명회사(Sociedad Regular Colectiva, S.R.C.)와 무한책임을 지는 출자자와 유한책임을 지는 출자자로 구성된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Com.), 1인 투자회사 등이 있음

□ 투자 진출 형태

○ 현지 법인 설립

- 법률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합명회사, 1인 투자회사가 법인에 속하며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업으로 영업활동 및 세무 등에 있어서 스페인 국내법이 적용됨

○ 지점

-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으며 본사를 대표해 스페인에서의 수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을 이행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에 있어 본사에 의존하는 성격이 짙고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음

○ 연락사무소

- 법적으로 본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으로, 스페인 내 직접적인 판매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마케팅 및 판촉 등의 부수적인 영업행위만 허용
- 연락사무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수요 조사,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의 경쟁 수준 연구 등에 있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유용함

○ 현지법인 인수 합병을 통한 투자진출

- 인수합병은 유럽경제 이해단체(E.E.I.G.)나 보통 경제 이해단체(E.I.G.)로 진행할 수 있고 현지 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진출할 경우 해당 기업의 노하우와 기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진출 형태별 설립절차

○ 법인의 설립절차



- 1) 회사 창립 동의서 제출 : 투자자들간의 새로운 회사 창립 동의서로, 회사유형, 창립목적, 초기 자본금, 회사주소 등 기본적 정보기입
- 2) 임시사업자 등록번호(N.I.F.) :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 납부와 신규 법인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 단계

절 차	서류 제출처	필 요 서 류	기간
일 반 절 차	소재지 세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 신분증 혹은 N.I.E.가 있는 기업 대표자의 서명이 있는 표준양식</li> <li>• 서명자 스페인 신분증, N.I.E. 사본</li> <li>• 회사 설립 의향서</li> </ul>	당일
온라인 접 수	회사 설립 증서를 대리하는 공증사무소가 온라인으로 세무서에 임시 N.I.F. 발급신청		

- 3) 자본금 납입 증명서 제출 : 자본금 현금납입을 해당은행 서류로 증명, 회사 설립 신고서 작성 시 공증인에게 제출



4) 회사설립 신고서 작성 : 주주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관 작성을 공증인 입회 아래 시행

- |                   |                |
|-------------------|----------------|
| ① 주주 신원 보증서       | ② 실제 명의에 대한 성명 |
| ③ 자본금 지불과 관련된 증명서 | ④ 상호           |
| ⑤ 회사 정관           | ⑥ 대표들의 신원과 수락  |
| ⑦ 외국인 투자 등록서      |                |

5) 상업등기 : 이전 과정까지의 해당 구비서류 일체를 상업 등기소에 제출

6) 외국인 투자 신고 및 법인세 등록 : 투자금액이 €6,000 이상인 경우 투자일로부터 30일 이내 경제재무부 상업과 투자부서에 투자신고를 해야 하고, 설립 후 기업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납부를 위한 등록을 해야 함

○ 지사의 설립

-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나 최소 자본금 불입 의무가 없고 회사 설립 신청서 작성 시 본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가 추가됨

- |                                |
|--------------------------------|
| ① 본사 사업자 등록서(번역/공증/아포스티유)      |
| ② 관리자 이름 및 개인정보                |
| ③ 본사로부터 받은 지사 승인서(번역/공증/아포스티유) |

○ 연락사무소의 설립

- 상업 등기소에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비교적 절차가 간단  
 - 사회보험, 세금, 고용과 관련해 연락사무소 개업, 자본금, 사무소 대표 법인 등의 내용을 담은 승인서를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마쳐 제출

## 5 스페인의 노무관리제도

### □ 근로관계의 특성

#### ○ 직장에 대한 인식

- 대부분의 스페인 근로자들은 직장이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게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함
- 이러한 이유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식수준이 낮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근무하는 근로자를 찾아보기 어려움
- 또한 개인 여가시간을 희생해가며 승진이나 특별수당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음

#### ○ 근로자 권리에 대한 의식

- (높은 권리의식) 스페인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이 짙어 노동자 권리나 주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 편임
- 고용자와 피고용 간 작성되는 노동협약 외에도 각 시, 자치주, 국가 단위의 산업별 단체노동협약이 복잡하게 얽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됨
  - \* 그러나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12년 2월 실시한 노동개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장치가 다소 약화됨. 회사와 근로자간의 노동협약이 타 단체 노동협약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함
- (성차별 인식) 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해 차별 대우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 '13년 말 기준 16~39세 사이 근로자(16~39세 사이) 남녀 비중은 53.5 : 46.5로 비슷한 수준이며, 남녀 간 임금 수준도 사실상 동일함.



□ 계약 시 유의사항

○ 노동법상 직원 분류법

- 스페인에서는 직원 분류를 노동계약 기간의 제한 유무에 따라 크게 정규직(Contrato por Tiempo Indefinido)과 비정규직(Contrato por una Duracion Determinada)으로 나뉨
-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는 현지 분위기 상 모든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을 우선시하며, 비정규직으로 채용 시 기업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비정규직은 하단의 표와 같이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됨

- ① 특정 공사 및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직
- ② 생산량 일시증가로 인한 계약직
- ③ 임신이나 건강 등으로 직원 부재시 채용하는 임시직

<스페인 일반 비정규직 계약 현황>

분류/목적	기 간	비 고
특정 공사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직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채용 가능(12개월 연장 가능)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0개월 중 24개월 이상을 초과할 시,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생산량 일시증가로 인한 계약직	12개월의 기간 중 최대 6개월 간 채용 가능	◆ 계약 종료 시, 피고용주에게 보상금(연간 급여 기준 8일분)을 지급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0개월 중 24개월 이상을 초과할 시,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임시직 (건강, 출산 부재 시)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복귀 시까지 채용 가능	◆ 계약서 작성 시, 임시직 채용자 명과 채용 사유를 명시해야 함

○ 기타 정규직의 종류

- 스페인에서는 여성 및 30대 미만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고용촉진용 정규직>을 별도로 운영함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동 노동계약은 일반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유사하나 해고수당 지급기일 수준이 연간 33일(최대 24개월)로 정규직(10년 당시 연간 45일, 최대 48개월)보다 축소됨\*

\* 그러나 이후 일련의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 불공정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 지급기일을 연간 33일(최대 24개월)로 낮춰, 고용촉진용 정규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짐

○ 기타 비정규직의 종류

- 그밖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비정규직이 있음

- 1) 청년 인턴직 :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학사 석사 박사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 경험을 제공
- 2) 교육용 노동 계약직 : 특정 업무를 위한 이론 및 실무 경험을 제공

<스페인 청년근로자 양성용 비정규직 현황>

분 류	기 간	비 고
청년 인턴	최소 6개월 최대 2년간 채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5년 이내 지원 가능</li> <li>◆ 급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급여의 최소 60~75% 수준으로 지급 가능</li> </ul>
교육용 노동 계약	최소 6개월 최대 2년간 채용 가능 (노동협정에 따라 3년까지 연장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16~21세 사이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li> <li>◆ 고용주는 근로자의 총 근무시간 중 최소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론교육에 할애해야 함</li> </ul>

○ 수습기간

- 고용주는 채용 희망자의 업무적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수습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 하에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최대 수습기간은 6개월(기술직의 경우) 혹은 2개월(기타 유형의 근로직)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금

- 스페인의 경우 퇴직금 제도는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 기간 중 납부한 사회보장세(납부기간 및 납부액 등)의 수준에 따라 국가 노후연금이 지급되고 있음.
- 최소 15 ~ 최대 35년간 근무 시 67세 이후부터 지급되며 연금수준은 '12년 기준 매월 최소 €587 ~ 최고 €35,320.46에 달함



○ 해고

- 스페인에서는 크게 합법적(Procedente)과 비합법적(Improcedente)인 방식으로 해고가 가능함
- 합법적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시, 또는 업무적인 무능함을 보였을 때 가능함. 이때 고용자는 경우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
- 비합법적 해고 시, 즉 고용주가 스페인 노동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용주를 해고할 경우, 피고용주에게 해고수당(연간 33일, 최대 24개월)을 지급해야 함

□ 급여 및 복지

○ 시간 당 최저임금

- 법정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21.38(일급), €641.4(월급)임
- 일반적으로 급여는 연봉 단위로 산정되며, 연봉은 두 번의 보너스를 포함한 14개월분으로 계산됨. 두 번의 보너스는 통상 크리스마스 휴가와 여름휴가 전에 지급됨
- 대체적으로 임금은 물가 인상률과 비례에 상승하는 편이나, 경제위기로 인한 대부분의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인해 최근 2~3년간 임금이 동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증가함

○ 숨겨진 고용비용 : 사회보장세

- 스페인 내 모든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현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분담 납부해야 함
- 사회보장세율은 급여의 36.25%이며 이중 29.9%는 고용인이, 6.35%는 피고용인이 부담함

<'15년 사회보장세 분담금 비율>

(단위 : %)

분 류	고용자 부담	피고용자 부담	계
일반분담금	23.6	4.7	28.3
실업보장	5.5	1.55	7.05
직업훈련 분담금	0.6	0.1	0.7
급여 보장 기금	0.2	-	0.2
합 계	29.9	6.35	36.25

○ 근로시간

- 일반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임
- 스페인 내 근로자는 연간 8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며, 초과 근무 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 초과근무에 상응하는 휴가를 제공하거나 2)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가

-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최소 하루 반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은 중앙·지방정부에서 지정한 휴일을 최대 14일까지 누릴 수 있음
- 유급 휴가기간은 평일기준(주말 포함) 연간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함
- 그 밖에, 결혼이나 파업, 수유기, 자녀 출산, 이사, 사고 등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노동자는 고용인의 허가 하에 유급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음

□ 시사점

- 스페인 근로자들은 현지 노동법에 저촉될 수 있는 회사 경영진의 방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법 관련 고문 변호사를 통해 현지 법률이나 관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5년 4월 기준 22.7%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고용 비용이 상당 부분 저렴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반 사무직, 건설직, 관광직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IV

## 부 록

1. 이전가격 관련 법령 .....	120
2. 한 - 스페인 조세조약 .....	132
3. 참고 자료 .....	154





## 1 이진가격 관련 법령

### □ 법인세법 18조 특수관계자 거래

#### Artículo 18. Operaciones vinculadas.

1. (시장가치에 의한 평가 원칙) Las operaciones efectuadas entre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se valorarán por su valor de mercado. Se entenderá por valor de mercado aquel que se habría acordado por personas o entidades independientes en condiciones que respeten el principio de libre competencia.
2. (특수관계자의 범위) Se considerarán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las siguientes :
  - a) Una entidad y sus socios o partícipes.
  - b) Una entidad y sus consejeros o administradores, salvo en lo correspondiente a la retribución por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 c) Una entidad y los cónyuges o personas unidas por relaciones de parentesco, en línea directa o colateral, por consanguinidad o afinidad hasta el tercer grado de los socios o partícipes, consejeros o administradores.
  - d) Dos entidades que pertenezcan a un grupo.
  - e) Una entidad y los consejeros o administradores de otra entidad, cuando ambas entidades pertenezcan a un grupo.
  - f) Una entidad y los cónyuges o personas unidas por relaciones de parentesco, en línea directa o colateral, por consanguinidad o afinidad hasta el tercer grado de los socios o partícipes de otra entidad cuando ambas entidades pertenezcan a un grupo.
  - g) Una entidad y otra entidad participada por la primera indirectamente en, al menos, el 25 por ciento del capital social o de los fondos propios.
  - h) Dos entidades en las cuales los mismos socios, partícipes o sus cónyuges, o personas unidas por relaciones de parentesco, en línea directa o colateral, por consanguinidad o afinidad hasta el tercer grado, participen, directa o indirectamente en, al menos, el 25 por ciento del capital social o los fondos propios.

I) Una entidad residente en territorio español y sus establecimientos permanentes en el extranjero.

En los supuestos en los que la vinculación se defina en función de la relación de los socios o partícipes con la entidad, la participación deberá ser igual o superior al 25 por ciento. La mención a los administradores incluirá a los de derecho y a los de hecho.

Existe grupo cuando una entidad ostente o pueda ostentar el control de otra u otras según los criterio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42 del Código de Comercio, con independencia de su residencia y de la obligación de formular cuentas anuales consolidadas.

3. (이전가격 문서제출 의무) La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con objeto de justificar que las operaciones efectuadas se han valorado por su valor de mercado, deberán mantener a disposición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de acuerdo con principios de proporcionalidad y suficiencia, la documentación específica que se establezca reglamentariamente.

Dicha documentación tendrá un contenido simplificado en relación con la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cuyo importe neto de la cifra de negocios, definido en los términos establecidos en el artículo 101 de esta Ley, sea inferior a 45 millones de euros.

En ningún caso, el contenido simplificado de la documentación resultará de aplicación a las siguientes operaciones :

1. ㉠ Las realizadas por contribuyentes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en el desarrollo de una actividad económica, a la que resulte de aplicación el método de estimación objetiva con entidades en las que aquellos o sus cónyuges, ascendientes o descendientes, de forma individual o conjuntamente entre todos ellos, tengan un porcentaje igual o superior al 25 por ciento del capital social o de los fondos propios.
2. ㉠ Las operaciones de transmisión de negocios.
3. ㉠ Las operaciones de transmisión de valores o participaciones representativas de la participación en los fondos propios de cualquier tipo de entidades no admitidas a negociación en alguno de los mercados regulados de valores, o que estén admitidos a negociación en mercados regulados situados en países o territorios calificados como paraísos fiscales.

- 4. ㉜ Las operaciones sobre inmuebles.
  - 5. ㉝ Las operaciones sobre activos intangibles.
- La documentación específica no será exigible :

- a) A las operaciones realizadas entre entidades que se integren en un mismo grupo de consolidación fiscal, sin perjuicio de lo previsto en el artículo 65.2 de esta Ley.
- b) A las operaciones realizadas con sus miembros o con otras entidades integrantes del mismo grupo de consolidación fiscal por las agrupaciones de interés económico, de acuerdo con lo previsto en la Ley 12/1991, de 29 de abril, de Agrupaciones de interés Económico, y las uniones temporales de empresas, reguladas en la Ley 18/1982, de 26 de mayo, sobre régimen fiscal de agrupaciones y uniones temporales de Empresas y de Sociedades de desarrollo industrial regional, e inscritas en el registro especial del Ministerio de Hacienda y Administraciones Públicas. No obstante, la documentación específica será exigible en el caso de uniones temporales de empresas o fórmulas de colaboración análogas a las uniones temporales, que se acojan al régimen establecido en el artículo 22 de esta Ley.
- c) Las operaciones realizadas en el ámbito de ofertas públicas de venta o de ofertas públicas de adquisición de valores.
- d) A las operaciones realizadas con la misma persona o entidad vinculada, siempre que el importe de la contraprestación del conjunto de operaciones no supere los 250.000 euros, de acuerdo con el valor de mercado.

- 4. (정상가격 산출방법) Para la determinación del valor de mercado se aplicará cualquiera de los siguientes métodos :
  - a) Método del precio libre comparable, por el que se compara el precio del bien o servicio en una operación entre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con el precio de un bien o servicio idéntico o de características similares en una operación entre personas o entidades independientes en circunstancias equiparables, efectuando, si fuera preciso, las correcciones necesarias para obtener la equivalencia y considerar las particularidades de la operación.
  - b) Método del coste incrementado, por el que se añade al valor de adquisición o coste de producción del bien o servicio el margen habitual en operaciones

idénticas o similares con personas o entidades independientes o, en su defecto, el margen que personas o entidades independientes aplican a operaciones equiparables, efectuando, si fuera preciso, las correcciones necesarias para obtener la equivalencia y considerar las particularidades de la operación.

- c) Método del precio de reventa, por el que se sustrae del precio de venta de un bien o servicio el margen que aplica el propio revendedor en operaciones idénticas o similares con personas o entidades independientes o, en su defecto, el margen que personas o entidades independientes aplican a operaciones equiparables, efectuando, si fuera preciso, las correcciones necesarias para obtener la equivalencia y considerar las particularidades de la operación.
- d) Método de la distribución del resultado, por el que se asigna a cada persona o entidad vinculada que realice de forma conjunta una o varias operaciones la parte del resultado común derivado de dicha operación u operaciones, en función de un criterio que refleje adecuadamente las condiciones que habrían suscrito personas o entidades independientes en circunstancias similares.
- e) Método del margen neto operacional, por el que se atribuye a las operaciones realizadas con una persona o entidad vinculada el resultado neto, calculado sobre costes, ventas o la magnitud que resulte más adecuada en función de las características de las operaciones idénticas o similares realizadas entre partes independientes, efectuando, cuando sea preciso, las correcciones necesarias para obtener la equivalencia y considerar las particularidades de las operaciones.

La elección del método de valoración tendrá en cuenta, entre otras circunstancias, la naturaleza de la operación vinculada, la disponibilidad de información fiable y el grado de comparabilidad entre las operaciones vinculadas y no vinculadas.

Cuando no resulte posible aplicar los métodos anteriores, se podrán utilizar otros métodos y técnicas de valoración generalmente aceptados que respeten el principio de libre competencia.

- 5. (복수 수혜자의 경우 판단) En el supuesto de prestaciones de servicios entre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valorados de acuerdo con lo establecido en el apartado 4, se requerirá que los servicios prestados produzcan o puedan producir una ventaja o utilidad a su destinatario.

Cuando se trate de servicios prestados conjuntamente en favor de varia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y siempre que no fuera posible la individualización del servicio recibido o la cuantificación de los elementos determinantes de su remuneración, será posible distribuir la contraprestación total entre las personas o entidades beneficiarias de acuerdo con unas reglas de reparto que atiendan a criterios de racionalidad. Se entenderá cumplido este criterio cuando el método aplicado tenga en cuenta, además de la naturaleza del servicio y las circunstancias en que éste se preste, los beneficios obtenidos o susceptibles de ser obtenidos por las personas o entidades destinatarias.

6. A los efectos de lo previsto en el apartado 4 anterior, el contribuyente podrá considerar que el valor convenido coincide con el valor de mercado en el caso de una prestación de servicios por un socio profesional, persona física, a una entidad vinculada y se cumplan los siguientes requisitos :
  - a) Que más del 75 por ciento de los ingresos de la entidad procedan del ejercicio de actividades profesionales y cuente con los medios materiales y humanos adecuados para el desarrollo de la actividad.
  - b) Que la cuantía de las retribuciones correspondientes a la totalidad de los socios-profesionales por la prestación de servicios a la entidad no sea inferior al 75 por ciento del resultado previo a la deducción de las retribuciones correspondientes a la totalidad de los socios-profesionales por la prestación de sus servicios.
  - c) Que la cuantía de las retribuciones correspondientes a cada uno de los socios-profesionales cumplan los siguientes requisitos :
    1. ◯ Se determine en función de la contribución efectuada por estos a la buena marcha de la entidad, siendo necesario que consten por escrito los criterios cualitativos y/o cuantitativos aplicables.
    2. ◯ No sea inferior a 1,5 veces el salario medio de los asalariados de la entidad que cumplan funciones análogas a las de los socios profesionales de la entidad. En ausencia de estos últimos, la cuantía de las citadas retribuciones no podrá ser inferior a 5 veces el Indicador Público de Renta de Efectos Múltiples.



El incumplimiento del requisito establecido en este número 2.º en relación con alguno de los socios-profesionales, no impedirá la aplicación de lo previsto en este apartado a los restantes socios-profesionales.

7. (특수관계자 간 비용분담계약의 요건) En el supuesto de acuerdos de reparto de costes de bienes o servicios suscritos entre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deberán cumplirse los siguientes requisitos :
- a) Las personas o entidades participantes que suscriban el acuerdo deberán acceder a la propiedad u otro derecho que tenga similares consecuencias económicas sobre los activos o derechos que en su caso sean objeto de adquisición, producción o desarrollo como resultado del acuerdo.
  - b) La aportación de cada persona o entidad participante deberá tener en cuenta la previsión de utilidades o ventajas que cada uno de ellos espere obtener del acuerdo en atención a criterios de racionalidad.
  - c) El acuerdo deberá contemplar la variación de sus circunstancias o personas o entidades participantes, estableciendo los pagos compensatorios y ajustes que se estimen necesarios.

El acuerdo suscrito entre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deberá cumplir los requisitos que reglamentariamente se fijen.

8. (조세회피목적으로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 과세 원칙) En el caso de contribuyentes que posean un establecimiento permanente en el extranjero, en aquellos supuestos en que así esté establecido en un convenio para evitar la doble imposición internacional que les resulte de aplicación, se incluirán en la base imponible de aquellos las rentas estimadas por operaciones internas realizadas con el establecimiento permanente, valoradas por su valor de mercado.
9. (과세당국에 대한 평가 요청) Los contribuyentes podrán solicitar a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que determine la valoración de las operaciones efectuadas entre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con carácter previo a la realización de éstas. Dicha solicitud se acompañará de una propuesta que se fundamentará en el principio de libre competencia.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podrá formalizar acuerdos con otras Administraciones a los efectos de determinar conjuntamente el valor de mercado de las operaciones.

El acuerdo de valoración surtirá efectos respecto de las operaciones realizadas con posterioridad a la fecha en que se apruebe, y tendrá validez durante los períodos impositivos que se concreten en el propio acuerdo, sin que pueda exceder de los 4 períodos impositivos siguientes al de la fecha en que se apruebe. Asimismo, podrá determinarse que sus efectos alcancen a las operaciones de períodos impositivos anteriores siempre que no hubiese prescrito el derecho de la Administración a determinar la deuda tributaria mediante la oportuna liquidación ni hubiese liquidación firme que recaiga sobre las operaciones objeto de solicitud. En el supuesto de variación significativa de las circunstancias económicas existentes en el momento de la aprobación del acuerdo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éste podrá ser modificado para adecuarlo a las nuevas circunstancias económicas.

Las propuestas a que se refiere este apartado podrán entenderse desestimadas una vez transcurrido el plazo de resolución.

Reglamentariamente se fijará el procedimiento para la resolución de los acuerdos de valoración de operaciones vinculadas, así como el de sus posibles prórrogas.

10. (과세관청의 사후검증과 결정)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podrá comprobar las operaciones realizadas entre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y efectuará, en su caso, las correcciones que procedan en los términos que se hubieran acordado entre partes independientes de acuerdo con el principio de libre competencia, respecto de las operaciones sujetas a este Impuesto, a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o a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con la documentación aportada por el contribuyente y los datos e información de que disponga.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quedará vinculada por dicha corrección en relación con el resto de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La corrección practicada no determinará la tributación por este Impuesto ni, en su caso, por 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o por 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de una renta superior a la efectivamente derivada de la operación para el conjunto de las personas o entidades que la hubieran realizado. Para efectuar la comparación se tendrá en cuenta aquella parte de la renta que no se integre en la base imponible por resultar de aplicación algún método de estimación objetiva.



11. (시장가격에서 이탈한 거래에 대한 처분) En aquellas operaciones en las que se determine que el valor convenido es distinto del valor de mercado, la diferencia entre ambos valores tendrá, para la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el tratamiento fiscal que corresponda a la naturaleza de las rentas puestas de manifiesto como consecuencia de la existencia de dicha diferencia.

En particular, en los supuestos en los que la vinculación se defina en función de la relación socios o partícipes-entidad, la diferencia tendrá, con carácter general, el siguiente tratamiento :

- a) Cuando la diferencia fuese a favor del socio o partícipe, la parte de la misma que se corresponda con el porcentaje de participación en la entidad se considerará como retribución de fondos propios para la entidad y como participación en beneficios para el socio. La parte de la diferencia que no se corresponda con aquel porcentaje, tendrá para la entidad la consideración de retribución de fondos propios y para el socio o partícipe de utilidad percibida de una entidad por la condición de socio, accionista, asociado o partícipe de acuerdo con lo previsto en el artículo 25.1.d) de la Ley 35/2006, de 28 de noviembre,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y de modificación parcial de las leyes de los Impuestos sobre Sociedades,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y sobre el Patrimonio.
- b) Cuando la diferencia fuese a favor de la entidad, la parte de la diferencia que se corresponda con el porcentaje de participación en la misma tendrá la consideración de aportación del socio o partícipe a los fondos propios de la entidad, y aumentará el valor de adquisición de la participación del socio o partícipe. La parte de la diferencia que no se corresponda con el porcentaje de participación en la entidad, tendrá la consideración de renta para la entidad, y de liberalidad para el socio o partícipe. Cuando se trate de contribuyentes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sin establecimiento permanente, la renta se considerará como ganancia patrimonial de acuerdo con lo previsto en el artículo 13.1.i).4.º d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aprobado por el Real Decreto Legislativo 5/2004, de 5 de marzo.



No se aplicará lo dispuesto en este apartado cuando se proceda a la restitución patrimonial entre la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en los términos que reglamentariamente se establezcan. Esta restitución no determinará la existencia de renta en las partes afectadas.

12. (과세관청의 검증 과정에 대한 규율) Reglamentariamente se regulará la comprobación de las operaciones vinculadas, con arreglo a las siguientes normas :

1.º La comprobación de las operaciones vinculadas se llevará a cabo en el seno del procedimiento iniciado respecto del obligado tributario cuya situación tributaria sea objeto de comprobación. Sin perjuicio de lo dispuesto en el siguiente párrafo, estas actuaciones se entenderán exclusivamente con dicho obligado tributario.

2.º Si contra la liquidación provisional practicada a dicho obligado tributario como consecuencia de la comprobación, éste interpusiera el correspondiente recurso o reclamación, se notificará dicha circunstancia a las demá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afectadas, al objeto de que puedan personarse en el correspondiente procedimiento y presentar las oportunas alegaciones.

Transcurridos los plazos oportunos sin que el obligado tributario haya interpuesto recurso o reclamación, se notificará la liquidación practicada a las demá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afectadas, para que aquellos que lo deseen puedan optar de forma conjunta por interponer el oportuno recurso o reclamación. La interposición de recurso o reclamación interrumpirá el plazo de prescripción del derecho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a efectuar las oportunas liquidaciones al obligado tributario y a las demás personas o entidades afectadas, a quienes se comunicará dicha interrupción, iniciándose de nuevo el cómputo de dicho plazo cuando la liquidación practicada por la Administración haya adquirido firmeza.

3.º La firmeza de la liquidación determinará su eficacia y firmeza frente a las demá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efectuará las regularizaciones que correspondan, salvo que dichas regularizaciones se hayan efectuado por la propia persona o entidad vinculada afectada, en los términos que reglamentariamente se establezcan.

- 4.º Lo dispuesto en este apartado será aplicable respecto de la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afectadas por la corrección que sean contribuyentes del Impuesto sobre Sociedades,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o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 5.º Lo dispuesto en este apartado se entenderá sin perjuicio de lo previsto en los tratados y convenios internacionales que hayan pasado a formar parte del ordenamiento interno.
- 6.º Cuando en el seno de la comprobación a que se refiere este apartado se efectuase la comprobación del valor de la operación, no resultará de aplicación lo dispuesto en el apartado 2 del artículo 57 y en el artículo 135 de la Ley 58/2003, de 17 de diciembre, General Tributaria.
13. 1.º (문서제출 의무 불성실 이행시 가산세) Constituye infracción tributaria la falta de aportación o la aportación de forma incompleta, o con datos falsos, de la documentación que, conforme a lo previsto en el apartado 3 de este artículo y en su normativa de desarrollo, deban mantener a disposición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la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cuando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no realice correcciones en aplicación de lo dispuesto en este artículo.
- Esta infracción tendrá la consideración de infracción grave y se sancionará de acuerdo con las siguientes normas :
- a) La sanción consistirá en multa pecuniaria fija de 1.000 euros por cada dato y 10.000 euros por conjunto de datos, omitido, o falso, referidos a cada una de las obligaciones de documentación que se establezcan reglamentariamente para el grupo o para cada persona o entidad en su condición de contribuyente.
- b) La sanción prevista en la letra anterior tendrá como límite máximo la menor de las dos cuantías siguientes :
- El 10 por ciento del importe conjunto de las operaciones sujetas a este Impuesto, a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o a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realizadas en el período impositivo.
  - El 1 por ciento del importe neto de la cifra de negocios.
- 2.º (위반의 종류) Constituyen infracción tributaria los siguientes supuestos, siempre que conlleven la realización de correcciones por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en aplicación de lo dispuesto en este artículo respecto de las

operaciones sujetas a este Impuesto, a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o a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

- (i) la falta de aportación o la aportación de documentación incompleta, o con datos falsos de la documentación que, conforme a lo previsto en el apartado 3 de este artículo y en su normativa de desarrollo, deban mantener a disposición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las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 (ii) que el valor de mercado que se derive de la documentación prevista en este artículo y en su normativa de desarrollo no sea el declarado en el Impuesto sobre Sociedades, 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o 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Estas infracciones tendrán la consideración de infracción grave y se sancionarán con multa pecuniaria proporcional del 15 por ciento sobre el importe de las cantidades que resulten de las correcciones que correspondan a cada operación. Esta sanción será incompatible con la que proceda, en su caso, por la aplicación de los artículos 191, 192, 193 o 195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por la parte de bases que hubiesen dado lugar a la imposición de la infracción prevista en este número 2.º

3.º (과세당국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법에 의한 벌금의 중복부과 금지)

Las correcciones realizadas por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en aplicación de lo dispuesto en este artículo respecto de operaciones sujetas a este Impuesto, a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o a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que determinen falta de ingreso, obtención indebida de devoluciones tributarias o determinación o acreditación improcedente de partidas a compensar en declaraciones futuras o se declare incorrectamente la renta neta sin que produzca falta de ingreso u obtención de devoluciones por haberse compensado en un procedimiento de comprobación o investigación cantidades pendientes de compensación, habiéndose cumplido la obligación de documentación específica a que se refiere el apartado 3 de este artículo, no constituirá la comisión de las infracciones de los artículos 191, 192, 193 o 195 de la Ley 58/2003, de 17 de diciembre, General Tributaria, por la parte de bases que hubiesen dado lugar a la referidas correcciones.

4.으 (가산세 부과 시 세법상 불복규정의 적용) Las sanciones previstas en este apartado serán compatibles con la establecida para la resistencia, obstrucción, excusa o negativa a las actuaciones de la Administración tributaria en el artículo 203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por la desatención de los requerimientos realizados.

Respecto de las sanciones impuestas conforme a lo dispuesto en este artículo resultará de aplicación lo establecido en los apartados 1.b) y 3 del artículo 188 de la Ley General Tributaria.

14. (다른 법에 의한 시장가격과의 독립성) El valor de mercado a efectos de este Impuesto,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o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no producirá efectos respecto a otros impuestos, salvo disposición expresa en contrario. Asimismo, el valor a efectos de otros impuestos no producirá efectos respecto del valor de mercado de las operaciones entre personas o entidades vinculadas de este impuesto,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o d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no Residentes, salvo disposición expresa en contrario.

## 2 한 - 스페인 조세조약

[1994.11.21]

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서명

1994년 11월 21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스페인왕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인적범위】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한다.

### 제 2 조 【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및
-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스페인에 있어서는,

- (1) 개인소득세
- (2) 법인세 및
- (3) 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이하 “스페인의 조세”라 한다.)

2. 이 협약은 이 협약의 서명일 이후에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상호 통보한다.

### 제 3 조 【일반적 정의】

1.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목적상,

- 가. “한국”이라 함은 국제법에 따라서 해상, 하층토 및 그들의 천연자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왔거나 지정될 대한민국의 영해에 인접한 지역을 포함하는 대한민국의 영역을 말한다.
- 나. “스페인”이라 함은 국제법과 스페인의 국내법에 따라서 해상, 하층토 및 상부수역 그리고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스페인이 관할권 또는 주권을 행사하거나 장래에 행사할 수 있는 영해 밖의 지역을 포함하는 스페인의 영역을 말한다.
- 다. “일방체약국” 및 “타방체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스페인을 말한다.
-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스페인의 조세를 말한다.
- 마. “인”이라 함은 개인, 회사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한다.
- 바. “회사”라 함은 법인격이 있는 단체 또는 조세 목적상 법인격이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말한다.
- 사.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각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 (2) 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단체
- 자. “국제운수”라 함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단,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 사이에서만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 (2) 스페인의 경우 경제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대리인

2. 일방체약국이 이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련된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 제 4 조 【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居所,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국가 내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개인은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국가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라. 동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제 5 조 【고정사업장】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 점
  - 다. 사 무 소
  - 라. 공 장
  - 마. 작 업 장
  - 바. 광산, 유전, 가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및
  - 사. 12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 또는 설치공사
3. 이 조의 전기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 보유
  -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하여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마. 기업을 위한 기타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
  - 바. 세항 가부터 마에 언급된 활동의 복합만을 위한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유지(단, 동 복합적 활동으로부터 초래되는 사업상 고정된 장소의 전반적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대리인 이외의 인이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며 일방계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동 인이 그 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에 관하여 동 체약국안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동 인의 활동이 사업상 고정된 장소에서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업상 고정된 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제3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5. 기업이 일방체약국에서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타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한, 동 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회사가 타회사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 제 6 조 【부동산 소득】

1. 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하여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 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독립적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 7 조 【사업이윤】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고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 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위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기 제항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항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 8 조 【해운 및 항공운수】

1.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합작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 9 조 【특수관계기업】

-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나. 동일인이 일방체약국의 기업과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리고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 기업 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 간에 설정되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동 조건으로 인하여 그 일방기업의 이윤으로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 기업의 이윤에 포함하여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 제10조 【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총배당액의 10퍼센트
  - 나. 기타의 모든 경우는 총배당액의 15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향익 주식이나 향익권, 광업권주, 발기인주 또는 채권이 아닌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회사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제11조 【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정부 금융기관에게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과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합의하는 정부 금융기관에 의하여 보증되거나 간접적으로 제공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는 동 일방체약국의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신용판매 또는 어느 기업의 타 기업에 대한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수취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

4. 이 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 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 공채 또는 사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국채, 공채 또는 사채에 부수되는 프리미엄과 장려금 및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상 금전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모든 소득으로 포함한다.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 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이자의 지급 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6. 이자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당국 또는 동 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이자지급인이 동 일방 체약국안에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와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있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제12조 【사용료】

1. 일방계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계약국에서도 동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 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계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계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그 지방당국 또는 동 계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는 동 일방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 지급인이 일방계약국의 거주자 여부에 관계

없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 지급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인 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나중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 제13조 【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자산이 직, 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의 주식, 지분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의 주식 또는 기타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퍼센트 직, 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단,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 항에서 언급된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취급되지 않은 이득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국제운수에 운영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양도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
6. 이 조의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타방채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가 그러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과세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단,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방채약국안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의하여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동 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가.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에 기간이 개시 또는 종료되는 어느 12월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타방채약국안에 체재하고,
  - 나.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다. 그 보수가 타방채약국안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 조의 전기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채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 운수에 운영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제16조 【이사의 보수】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의 보수 및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채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제1항에 언급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제18조 【연금 및 보험연금】

이 협약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19조 【정부용역】

1.

가. 일방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1) 동 국의 국민인 자, 또는

(2) 단지 그 용역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2.

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동 일방체약국, 그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창설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그러나 그러한 연금에 대하여는 그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

가. 타방채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그 타방채약국에서 일시적으로 체재하며 방문목적이 주로

- (1) 타방채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기 위하여, 또는
- (2) 전문직업 또는 전문직업상의 특기를 행할 자격을 갖추는데 요구되는 훈련을 받기 위하여, 또는
- (3) 정부, 종교, 자선, 학술, 문학 또는 교육단체로부터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학습 또는 조사연구를 하기 위함일 경우에는 이 항 “나”에 기술된 금액은 타방채약국 도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동 타방채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이 항 “가”에 언급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인적용역에 대한 보상이 아닌 생계, 교육, 학습, 조사연구 또는 훈련을 위한 해외로부터의 송금
- (2)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및
- (3) 그 타방채약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으로서, 그 합계 금액이 과세연도 중 1,000,000페세타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통화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2. 타방채약국을 방문할 당시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일방채약국 거주자의 피고용자로서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방채약국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며 방문 목적이 주로

가. 그 일방채약국의 거주자 이외의 자료부터 기술상, 직업상 또는 사업상의 경험을 습득하기 위하여, 또는

나. 그 타방채약국의 대학 또는 기타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기 위함일 경우에는 연속하여 12월 기간 동안 그 합계금액이 1,000,000페세타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한국통화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타방채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이 조는 연구가 공익목적이 아니며 주로 특정개인 또는 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수행될 경우 그 연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1조 【교수 및 교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타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타방체약국의 종합대학, 단과대학, 학교 또는 타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비영리기관으로 인정된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그러한 기관에서 강의, 연구 또는 강의와 연구의 양자를 위한 목적만으로도 동 타방체약국에 최초 도착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로부터 취득하는 보수에 대하여 동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세된다.

### 제22조 【기타소득】

- 이 협약의 전기 각 조에서 취급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항목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3조 【이중과세의 회피】

-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스페인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스페인법과 이 협약에 따라 납부할 스페인의 조세(배당의 경우에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는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스페인내의 원천소득이 한국 조세의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스페인 거주자의 경우에, 이중과세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스페인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수취하였을 경우, 스페인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납부된 세액을 공제한다. 단, 그러한 공제는 그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어 한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스페인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자본의 최소한 25퍼센트를 직접 소유한 회사에게 배당이 지급될 경우,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 배당지급 한국회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납부된 그 배당과 관련있는 이윤에 대한 세액은 배당수취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항 “가”의 세액공제에 추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제는 이 항 ”가”에 의하여, 배당에 주어지는 공제와 더불어,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되어 한국의 조세가 과세된 소득에 귀속될 수 있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배당 지급법인에 대한 지분참여는 배당지급일 이전 2년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다. 스페인의 거주자가 취득한 소득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스페인에서 면제되는 경우에도 스페인은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된 소득을 고려할 수 있다.

### 제24조 【무차별】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상황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 타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는 동일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부과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 부양책임을 이유로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 목적상 어떠한 인적공제, 구제 및 경감을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 기업의 과세이윤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이들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제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방체약국의 1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동 일방체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및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더 과중한 조세 또는 그와 관련된 요건을 동 일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와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 일방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어느 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동인이

간주하는 경우에, 동인은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수단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또는 그의 문제가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동 문제는 이 협약의 제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의 최초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권한있는 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동 당국 스스로는 적절한 해결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협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3.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의문을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중과세 회피 및 이 협약의 남용방지를 위하여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기 제항에서 의미라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견교환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제26조 【정보교환】

1.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시행하거나, 또는 국내법에 따른 과세가 이 협약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정보는 동 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 징수, 강제집행 또는 소추나 쟁송청구의 결정에 관련되는 인 또는 당국

(사법, 행정기관 포함)에 대하여만 공개된다. 그러나 인 또는 당국은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 법정절차 또는 사법 판결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어떠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 또는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는 것

나. 일방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률하에서나 또는 행정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입수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공공질서)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원】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의 일반규칙 또는 특별협정의 제 규정에 의한 외교관 및 영사관원의 재정상의 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8조 【발효】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에서 교환된다.

2. 이 협약은 비준서 교환일에 발효하며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비준서교환이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비준서교환이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 제29조 【종료】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체약국은 비준서교환 연도이후 5년째부터 어느 연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타방체약국에 대하여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가.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통보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하여
- 나. 기타의 조세에 대하여는, 종료 통보가 주어지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왕국 정부를 위하여

의정서(1994.11.21)

## 의 정 서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서명함에 있어서, 하기 서명자는 이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음의 규정에 합의하였다.

### 1. 제10조(배당)에 관하여

가. “배당”의 의미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청산분배금이 포함된다.

나. 제10조 제2항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26일자 스페인 법률 제46호의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스페인 조세가 부과되는 스페인 투자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 제10조 제2항 “나”의 규정을 적용한다.

### 2. 제19조(정부용역)에 관하여

제1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정부적 성격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정부적 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 또는 보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정부적 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1994년 1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보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스페인왕국 정부를 위하여

### 3 참고 자료



#### □ 참고문헌

- KOTRA, 「국가별 정보 - 스페인」
- KOTRA, 「스페인 진출 전략 보고서」
- 스페인 대외무역진흥청(ICEX), 「Guide to business in Spain 2014」
- 주 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 「한-스페인 투자동향」
- OECD, 「2014 Spain Transfer Pricing Profile」
- CFE, 「Transfer Pricing Survey 2013/2014」
- Deloitte, 「2014 Global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 TP Week, 「World Transfer Pricing 2014」
- PWC,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2013/14」
- KPMG,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 EY, 「Spain proposes new country-by-country reporting obligations and changes to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requirement」
- Santiago Ibanes Marsill, 「Guide to Spanish Tax Law Research」
- TPWeek, 「World Transfer Pricing 2015」
- Agencia Tributaria, 「Annual Report 2013」
- Gomes-Acebo & Pombo, 「Spanish Tax Alert 2014」

#### □ 유관기관 홈페이지 링크

- 국가기관
  - 국회 : [www.congreso.es](http://www.congreso.es)
  - 상원 : [www.senado.es](http://www.senado.es)
  - 헌법재판소 : [www.tribunalconstitucional.es](http://www.tribunalconstitucional.es)



- 정부공식사이트 : [www.lamoncloa.es](http://www.lamoncloa.es)
  - 산업에너지관광부 : [www.minetur.gob.es](http://www.minetur.gob.es)
  - 경제경쟁력부 : [www.mineco.gob.es](http://www.mineco.gob.es)
  - 중앙은행 : [www.bde.es](http://www.bde.es)
  - 재정공공행정부 : [www.minhap.gob.es](http://www.minhap.gob.es)
  - 세무청(국세청 및 관세청 기능) : [www.agenciatributaria.es](http://www.agenciatributaria.es)
  - 식약청 : [www.aemps.es](http://www.aemps.es)
  - 중앙정부관보 : [www.boe.es](http://www.boe.es)
  - 공공조달관련D/B : [www.contrataciondelestado.es](http://www.contrataciondelestado.es)
  - 품목HS 코드별관세검색 : [www.taric.es](http://www.taric.es)
  - 통계청 : [www.ine.es](http://www.ine.es)
  - 수출입통계 : [www.datacomex.comercio.es](http://www.datacomex.comercio.es)
  - 해외투자통계 : [www.datainvex.comercio.es](http://www.datainvex.comercio.es)
  - 대외무역진흥청(ICEX) : [www.icex.es](http://www.icex.es)
  - 투자진흥청(INVEST IN SPAIN\*) : [www.investinspain.org](http://www.investinspain.org)
- 산업협회
- 전경련(CEOE) : [www.ceoe.es](http://www.ceoe.es)
  - 전자정보통신협회(AMETIC) : [www.ametic.es](http://www.ametic.es)
  - 자동차제조사협회(ANFAC) : [www.anfac.es](http://www.anfac.es)
  - 의료기기협회(FENIN) : [www.fenin.es](http://www.fenin.es)
  - 수출기업협회(AMEC) : [www.amec.es](http://www.amec.es)
  - 전자 및 IT분야 수출기업연합회 : [www.secartys.org](http://www.secartys.org)
  - 이러닝협회 : [www.apel.es](http://www.apel.es)
  - 자동차부품제조사협회 : [www.sernauto.es](http://www.sernauto.es)
  - 전자상거래협회 : [www.adigital.org](http://www.adigital.org)
  - 조명기기제조사협회 : [www.anfalum.com](http://www.anfalum.com)
  - 전기제품제조사협회 : [www.afme.es](http://www.afme.es)



##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시멘트제조사협회 : [www.oficemen.com](http://www.oficemen.com)
- 섬유산업정보센터 : [www.cityc.es](http://www.cityc.es)
- 플라스틱산업협회 : [www.cep-inform.es](http://www.cep-inform.es)
- 재생에너지협회 : [www.appa.es](http://www.appa.es)
- 태양광산업협회 : [www.unef.es](http://www.unef.es)
- 풍력산업협회 : [www.aceolica.org](http://www.aceolica.org)
- 화장품협회 : [www.stanpa.com](http://www.stanpa.com)
- 섬유무역협회(ACEXPIEL) : [www.spanishtanners.com](http://www.spanishtanners.com)
- 제화협회(AEC) : [www.fcfs.es](http://www.fcfs.es)
- 스포츠산업협회(AFYDAD) : [www.afydad.com](http://www.afydad.com)
- 비료 협회(ANFFE) : [www.anffe.com](http://www.anffe.com)
- 가구 협회(ANIEME) : [www.anieme.com/es](http://www.anieme.com/es)
- 세라믹 협회(ASCER) : [www.ascer.es](http://www.ascer.es)
- 가죽제품 협회(ASEFMA) : [www.asefma.com](http://www.asefma.com)
- 수출기업 및 투자가 협회(CLUBEX) : [www.clubexportadores.org](http://www.clubexportadores.org)
- 귀금속 협회(JOYEX) : [www.joyex.com](http://www.joyex.com)
- 철강 산업 협회(UNESID) : [www.unesid.org](http://www.unesid.org)

### ○ 상공회의소

- 빌바오 상공회의소(Bilbao) : [www.camarabilbao.com](http://www.camarabilbao.com)
- 바르셀로나 상공회의소(Barcelona) : [www.cambrabcn.org](http://www.cambrabcn.org)
- 그란까나리아 상공회의소(Gran Canaria) : [www.camagrancanaria.org](http://www.camagrancanaria.org)
- 말라가 상공회의소(Málaga) : [www.camaramalaga.com](http://www.camaramalaga.com)
- 마드리드 상공회의소(Madrid) : [www.camaramadrid.es](http://www.camaramadrid.es)
- 무르시아 상공회의소(Murcia) : [www.camaramurcia.es](http://www.camaramurcia.es)
- 나바라 상공회의소(Navarra) : [www.camaranavarra.com](http://www.camaranavarra.com)
- 발렌시아 상공회의소(Valencia) : [www.camaravalencia.com](http://www.camaravalencia.com)
- 오비에도 상공회의소(Oviedo) : [www.camara-ovi.es](http://www.camara-ovi.es)



## □ 추천 법무법인 / 회계법인

### ☒ DELOITTE

- ◆ 주 소 : Plaza de Pablo Ruia Picasso 1, Torre Picasso 28020 Madrid
- ◆ 전화번호 : +34 91 514 5000
- ◆ 팩 스 : +34 91 514 5180
- ◆ 홈페이지 : [www.deloitte.es](http://www.deloitte.es)

### ☒ AMYA ABOGADOS

- ◆ 주 소 : C/ Princesa, 61, 5, 28008, Madrid
- ◆ 전화번호 : +34 91 548 8328
- ◆ 팩 스 : +34 91 548 8256
- ◆ 홈페이지 : [www.amya.es](http://www.amya.es)

### ☒ ERNST & YOUNG

- ◆ 주 소 : Plaza Palbo Ruiz picasso, 1 Torre Picasso 28020 Madrid
- ◆ 전화번호 : +34 91 572 7200
- ◆ 팩 스 : +34 91 572 7238
- ◆ 홈페이지 : [www.ey.com](http://www.ey.com)

### ☒ KPMG

- ◆ 주 소 : Paseo de la Castellana, 95 Edificio Torre Europa 28046 Mdirid
- ◆ 전화번호 : +34 91 456 3400
- ◆ 팩 스 : +34 91 555 0132
- ◆ 홈페이지 : [www.kpmg.es](http://www.kpmg.es)

### ☒ PRICEWATERHOUSE COOPERS

- ◆ 주 소 : Edificio Marann Paseo de la Castellana, 259 Torre B 28046 Madid
- ◆ 전화번호 : +34 90 202 1111
- ◆ 홈페이지 : [www.pwc.es](http://www.pwc.es)

### ☒ SALVADOR FERRANDIS & PARTNERS

- ◆ 주 소 : Velazques 146. 1 Derecha, 28002, Madrid
- ◆ 전화번호 : +34 564 2300
- ◆ 팩 스 : +34 563 3538
- ◆ 홈페이지 : [www.sflegal.com](http://www.sflegal.com)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AMYA ABOGADOS

- ◆ 주 소 : C/ Princesa, 61, 5, 28008, Madrid
- ◆ 전화번호 : +34 91 548 8328
- ◆ 팩 스 : +34 91 548 8256
- ◆ 홈페이지 : www.amya.es

☒ AFFIRMA

- ◆ 주 소 : Paseo de la Castellana, 259C, Torre de Cristal, planta 18, 28046, Madrid
- ◆ 전화번호 : +34 902 88 88 72
- ◆ 홈페이지 : www.affirmasociudades.com.

☒ CONSULTING F

- ◆ 주 소 : Avenida del General Peron, 16, Madrid
- ◆ 전화번호 : +34 915 360 268
- ◆ 팩 스 : +34 915 988 129
- ◆ 홈페이지 : www.consultigf.com

□ 현지 한국인 변호사 (투자 진출 컨설팅 및 업무대행)

📖 이윤교 변호사

- ◆ 전화번호 : + 34 91 564 2300
- ◆ 이 메 일 : yklee@sfplegal.com
- ◆ 홈페이지 : www.sfplegal.com/our-team/이윤교-변호사

📖 이서후 변호사

- ◆ 전화번호 : +34 91 750 3325
- ◆ 이 메 일 : info\_contackorea@ono.com
- ◆ 홈페이지 : www.contacspain.com

📖 장우성 변호사

- ◆ 전화번호 : +34 92 826 6432
- ◆ 이 메 일 : changws@telefonica.net

📖 주민애 변호사

- ◆ 전화번호 : +34 92 822 9644
- ◆ 이 메 일 : jooandmelado@gmail.com



## □ 정부 투자기관 정보

### 1. 빌바오 (Bilbao)

- ◆ 명 칭 : SPRI S.A.
- ◆ 주 소 : Alameda Urquijo, 36 -4ªPlanta Edificio Plaza Bizkaia. 48011 Bilbao
- ◆ 전화번호 : +34 944 037 000
- ◆ 팩 스 : +34 944 037 022
- ◆ 홈페이지 : [www.spri.es](http://www.spri.es)

### 2. 바르셀로나 (Barcelona)

- ◆ 명 칭 : Invest in Catalonia.
- ◆ 주 소 : Pg de Gràcia 129. 08008 Barcelona
- ◆ 전화번호 : +34 934 767 200
- ◆ 팩 스 : +34 934 767 300
- ◆ 홈페이지 : [www.investincatalonia.com](http://www.investincatalonia.com)

### 3. 무르시아 (Murcia)

- ◆ 명 칭 : Instituto de Fomento de la Región de Murcia
- ◆ 주 소 : Avda. de Fama, 3 30003 Murcia
- ◆ 전화번호 : +34 968 366 843
- ◆ 팩 스 : +34 968 368 441
- ◆ 홈페이지 : [www.investinmurcia.com](http://www.investinmurcia.com)

### 4. 나바라 (Navarra)

- ◆ 명 칭 : Sociedad de Desarrollo de Navarra (SODENA)
- ◆ 주 소 : Avenida Carlos III el Noble, 36, 1ºDcha. 31003 Pamplona
- ◆ 전화번호 : +34 848 421 942
- ◆ 팩 스 : +34 848 421 943
- ◆ 홈페이지 : [www.investinnavarra.com](http://www.investinnavarra.com)

### 5. 말라가 (Malaga)

- ◆ 명 칭 : Agencia de Innovación y Desarrollo de Andalucía
- ◆ 주 소 : Torneo 26, 41002 Sevilla
- ◆ 전화번호 : +34 955 030 775-831
- ◆ 홈페이지 : [www.agenciaidea.es](http://www.agenciaidea.es)





#### 6. 마드리드 (Madrid)

- ◆ 명 칭 : Invest in Madrid
- ◆ 주 소 : General Díez Porlier, 35, 1ªplanta -28001 Madrid
- ◆ 전화번호 : +34 91 310 59 90
- ◆ 홈페이지 : [www.investinmadrid.com](http://www.investinmadrid.com)

#### 7. 그란 까나리아 (Gran Canaria)

- ◆ 명 칭 : Sociedad Canaria de Fomento Económico (PROEXCA)
- ◆ 주 소 : Calle Emilio Castelar, 4-5ªplanta 35007, Las Palmas de Gran Canaria
- ◆ 전화번호 : +34 928 472 400, 팩스 : +34 928 472 401
- ◆ 홈페이지 : [www.proexca.es/en/](http://www.proexca.es/en/)

#### 8. 발렌시아 (Valencia)

- ◆ 명 칭 : Ivace Internacional
- ◆ 주 소 : Ciudad Administrativa Nueve de Octubre-Torre 2. Calle Castán Tobeñas, 77 46018 Valencia
- ◆ 전화번호 : +34 961 209 752
- ◆ 홈페이지 : [www.internacional.ivace.es](http://www.internacional.ivace.es)

#### 9. 오비에도 (Oviedo)

- ◆ 명 칭 : Instituto de Desarrollo Económico del Principado de Asturias
- ◆ 주 소 : Parque Tecnológico de Asturias 33428 Llanera (Asturias)
- ◆ 전화번호 : +34 985 980 020, 팩스 : +34 985 264 455
- ◆ 홈페이지 : [www.idepa.es](http://www.idepa.es)

## 스페인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 : 044 - 204 - 2828

팩스 : 044 - 216 - 6066

원고 작성 및 편집

행정사무관 임 경 수

행정사무관 구 자 은

행정사무관 한 세 온

---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044-204-2828)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